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Establishment of Systematic Basis for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차주영 Tchah, Chu Young
염철호 Yum, Chirl Ho
심경미 Sim, Kyung Mi

(a u r i

AURI-정책-2013-4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지은이: 차주영, 심경미, 염철호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3년 10월 15일, 발행: 2013년 10월 16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시민대로 230, B-301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8,000원, ISBN: 978-89-97468-68-3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연구책임 차주영 부연구위원

┆ 연구진 염철호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정민기 연구보조원
 김정은 연구보조원

┆ 연구심의위원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임유경 부연구위원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엽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홍성준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사무관

┆ 연구자문위원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과장
 김의중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김종천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주경 새건축사협의회 이사
 김진욱 A&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
 김창균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김태우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김흥수 새건축사협의회 이사
 백민석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박순천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박인수 새건축사협의회 이사
 심재훈 부림건축사사무소 이사
 유재철 범건축사사무소 이사
 윤승현 새건축사협의회 이사
 윤흥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
 이강호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이정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영철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연구요약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은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잠재력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세계의 건축서비스 분야 시장 점유율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국가적인 지원체계의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건설산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온 건축서비스를 지식 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우선순위가 아닌 설계안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이 지식집약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연관 산업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으로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신규 법률로의 제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었다. 또한 도시와 건축이 자산으로서 가지는 가치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 마련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법제정에 대한 추진동력이 보다 강화되었다.

이러한 입법화 추진동력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건축도시공간 연구소의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정립 및 건축서비스산업 육성방안 관련 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준비모임이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여성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건축계를 대표하는 건축실무자들의 모임을 중심

으로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입법추진단 실무 TFT’를 구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2011년 제18대 국회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처음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말 제19대 국회에 재상정하고, 2013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건축설계산업육성 TFT’를 발족하여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는 2014년 6월 5일 시행예정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향후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쟁점을 도출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후속적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건축계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은 그동안 미약했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미진하였거나 입법전략상 누락된 부분에 대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안의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법률의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과 추진계획 등이 마련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법률안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건축서비스,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진흥법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3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5
4. 연구의 기대효과	6
제2장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	7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목적 및 하위법령 위임 사항	7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0
3.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12
4.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20
5.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36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지원기관 지정 및 설립	64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해설	71
1. 총칙	71

2.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79
3.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98
4.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119
5.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142
6. 보칙 및 벌칙	144

제4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현안 및 후속과제147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을 위한 주요 현안	147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후속 제도개선 방향	152

제5장 결론169

참고문헌	171
Summary	173

표차례

[표 1- 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주요내용 비교	5
[표 2-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구성	8
[표 2- 2] 하위법령이 필요한 법조문	10
[표 2- 3] 한국 건설산업의 시설물/분야별 기술수준(기술선진국=100)	16
[표 2-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22
[표 2- 5]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23
[표 2-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 등	24
[표 2- 7] 국내 우수건축 시상제도 운영 사례	32
[표 2- 8] 건축설계분야 기준금액별 발주용역 현황	36
[표 2- 9] 건축설계분야 발주방식별 용역 현황	37
[표 2-10] 용도별, 건축공사비별 건축사업 총 계약건수(공공기관+민간 합계)	50
[표 2-11] 건축설계분야 기준금액별 발주용역 현황	50
[표 2-12] 2011년 중앙정부의 공공건축 관련 전체 예산	55
[표 2-13] 중앙정부 주요부처의 공공건축 관련 담당부서	57
[표 2-14] 해외의 공공건축 전담기구 운영사례	62
[표 2-15] 수익사업이 가능한 진흥원 사례	66
[표 3-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조 관련 법조문	71
[표 3-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법조문	72
[표 3-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 관련 법조문	73
[표 3-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법조문	74
[표 3- 5]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관련 법조문	76
[표 3- 6]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관련 법조문	76
[표 3-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기본계획 관련 법조문	77
[표 3- 8] 건축정책 기본계획 관련 법조문	78
[표 3- 9]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관련 법조문	79
[표 3-10] 문화산업통계 조사 관련 법조문	80
[표 3-11] 엔지니어링 산업의 실태조사 관련 법조문	80
[표 3-12]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관련 법조문	81
[표 3-13] 엔지니어링 산업의 정보체계 구축 관련 법조문	83
[표 3-1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법조문	83

[표 3-15]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현황 통보 관련 법조문	84
[표 3-16] 건축기본조사 관련 법조문	86
[표 3-17]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관련 법조문	86
[표 3-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관련 법조문	88
[표 3-19] 문화기술 연구·개발 관련 법조문	90
[표 3-20]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법조문	90
[표 3-21] 건설기술의 연구 및 개발 관련 법조문	91
[표 3-22] 건설기술 시범사업 관련 법조문	93
[표 3-23] 건축정책 관련 조사·연구 관련 법조문	94
[표 3-24] 표준화 기본조성 관련 법조문	94
[표 3-25] 엔지니어링 기술의 표준화 관련 법조문	95
[표 3-26] 건설기술에 있어서 설계 등의 표준화 관련 법조문	95
[표 3-27]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법조문	98
[표 3-28]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관련 법조문	100
[표 3-29] 창업지원 관련 법조문	101
[표 3-3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창업지원 관련 법조문	102
[표 3-3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관련 법조문	103
[표 3-32] 진흥시설의 지정취소 관련 법조문	105
[표 3-33]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관련 법조문	105
[표 3-34]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관련 법조문	108
[표 3-35]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관련 법조문	109
[표 3-36]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관련 법조문	110
[표 3-37] 엔지니어링 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법조문	111
[표 3-38] 문화상품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관련 법조문	112
[표 3-39]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관련 법조문	112
[표 3-40] 우수문화상품 지정 관련 법조문	114
[표 3-41]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관련 법조문	118
[표 3-42] 설계공모의 활성화 관련 법조문	119
[표 3-43] 발주방식별 관련 법령 및 지침 현황	122
[표 3-44]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기준 비교	124
[표 3-45] 용역금액별 적격심사방식	125
[표 3-46]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26
[표 3-47] 용역적격심사평가 방식	127
[표 3-48] 기술자평가기준	127
[표 3-49] 기술제안서평가기준	127
[표 3-50] 설계공모의 우선적용 대상 관련 법조문	127
[표 3-51] 설계의도 구현 관련 법조문	130
[표 3-52] 사후설계관리 업무 관련 법조문	132
[표 3-53]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검토 관련 법조문	135
[표 3-54]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조문	136

[표 3-55]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관련 법조문	138
[표 3-56]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법조문	139
[표 3-57]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관련 법조문	141
[표 3-58] 건축진흥원 설립 관련 법조문	142
[표 3-59] 출연금 관련 법조문	143
[표 3-60] 권한의 위임 관련 법조문	144
[표 3-61]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법조문	145
[표 4-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사 업무항목 개선(안)	155
[표 4- 2]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개선안	160
[표 4- 3] 용역금액별 적격심사방식	160
[표 4- 4] 건축설계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안(예시)	161
[표 4- 5] 설계공모 운영지침(안)	162
[표 4- 6]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안)	164
[표 4- 7] 설계공모 실적 세부평가기준(안)	164
[표 4- 8] 기술자 경력 등 (책임건축사 또는 책임기술자의 경력) 배점(안)	164
[표 4- 9]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안)	164
[표 4-10] 신용도(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경우) 배점(안)	165
[표 4-11] 용역비 규모에 따른 평가분야별 배점(안)	166
[표 4-12]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배점(안)	166
[표 4-13]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배점(안)	166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수행도	4
[그림 2-1] CEPD 2009년 수상작 사례	33
[그림 2-2] 타카마츠 시의 경관중요건조물 지정 현황 사례	35
[그림 2-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 절차	47
[그림 2-4] 총공사비별 사전검토 대상 구분	51
[그림 2-5] 사전검토 시기(안)	52
[그림 2-6] 호화청사로 지적되고 있는 지자체 청사	56
[그림 2-7]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기능	61
[그림 2-8] 건축진흥원 예상 조직도(안)	67
[그림 4-1]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 공공건축물	15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반 마련
 -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안전과 품격 등 사회·문화 요구를 수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서비스산업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2013년 6월 4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이 제정됨
 -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마련 필요
 - 2014년 6월 5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주요 건축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법의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타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실효성 있는 법의 시행을 위해 관련 하위 법령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그동안 TF에서 진행된 논의를 종합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규정을 통해 규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실질적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더불어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적 방향 설정이 중요함
 - 따라서 국가가 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인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와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2) 연구의 목적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 2014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시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의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쟁점을 도출 및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안) 작성
 - 2013년 6월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분석을 통해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위임된 하위법령 내용 구체화
 - 관련 타법 및 조문별 해당 사례 검토를 통한 하위법령 작성 기준 도출 및 조문별 대안 작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기존 문헌 검토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학협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현안 검토 및 주요 쟁점 도출
 - 이를 바탕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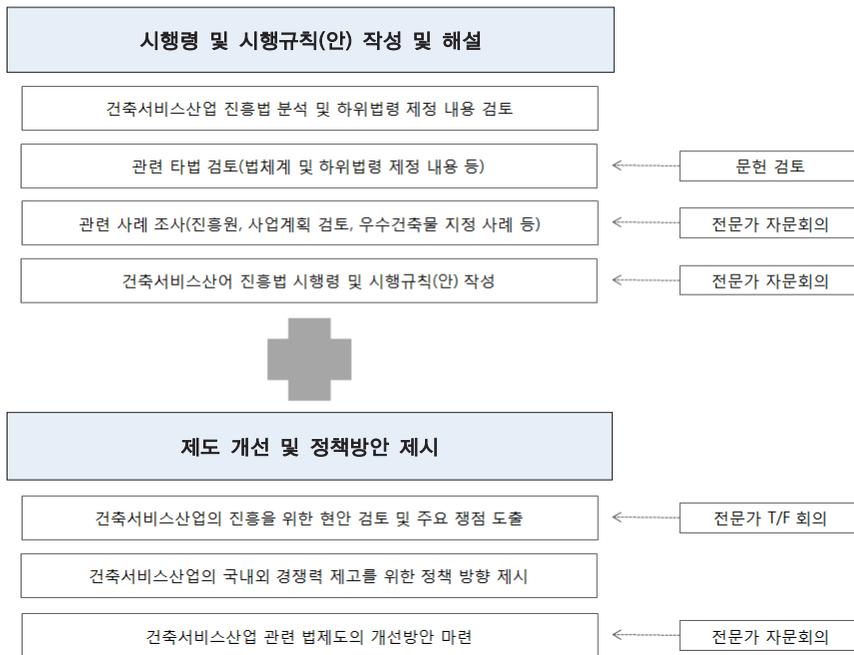
- 국내외 관련 법체계 및 관련 사례 등 문헌 조사
 - 법령 조문 별 타법의 입법례 조사 및 법령 내용과 법체계 분석
 - 진흥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흥원운영, 전문인력양성,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계획 검토, 우수건축물 지정 등 주요항목별 추진목적, 주체, 방법 등에 관한 관련 문헌 조사
- 전문가 활용
 -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회의 실시
 - 타법에 의해 설립된 진흥원,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등 관련 전문가 인터뷰
 -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 건축설계 기획업무 개선 관련, 건축정보 시스템 구축, 건축문화 진흥, 신진건축사 육성, 건축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하위법령안 작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구성 및 실무협의회 실시

-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새건축사협의회, 대한여성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의 임원과 기타 학계 및 건축설계실무, 국토교통부, 법제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T/F팀 구성
- T/F팀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쟁점 정리 및 하위법령 작성 방향 마련

3) 연구수행도



[그림 1-1] 연구수행도

4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가장 높은 연구로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진흥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으며,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연구로는 건축 관련 제도의 체계적인 기반조성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해 해당 분야의 법률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유광흠 외, 2011)’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유광흠 외, 2011)’,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김진욱 외, 2010)’ 등이 있음
- 건축 관련 제도의 체계적인 기반조성과 관련한 연구로는 ‘건축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유광흠 외, 2010)’, ‘건축관련 법령 재정비 연구(황은경 외, 2007)’ 등이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적 관점에서 육성 방안을 논의한 연구로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김진욱 외, 2009)’ 등이 있음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주요내용 비교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자(년도): 유광흠 외(2011) •연구목적: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선진화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문헌자료 조사분석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관련 전문기관 방문 및 담당자 면접 •전문가 자문 및 분야별 합동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해외사례 •관련 산업과의 동반 성장전략 제시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제시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안 제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 방안 •연구자(년도): 유광흠 외(2011) •연구목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입법 추진을 위한 제정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기존 선행 입법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및 TF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안의 제정을 위한 입법안 제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건축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연구자(년도) : 유광흠 외(2010) •연구목적 : 건축법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체계 정비 사례 조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해외의 건축법제에 대한 분석 •전문가 설문·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의 개요 •건축법의 현황 및 문제점 •법제 체계정비 사례 •해외 건축법제 사례 •건축법의 체계 정비 방향

	으로 수행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 김진욱 외(2010) •연구목적 :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포럼 및 심포지움 •관련 법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서비스산업의 중요성 •건축서비스산업의 효과 •관련 법률과의 연계방안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입법 추진 방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 김진욱 외(2009) •연구목적 :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관련통계지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향조사 •OECD 국가별 통계 •비교 분석 •업체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계 현황 조사 •해외 산업 동향 조사 •생산성 비교 •관련 통계 지표 제시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건축관련 법령 재정비 연구 •연구자(년도) : 황은경 외(2007) •연구목적 : 건축 관계법령의 재정비 기준 및 개선체계를 마련하고,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이 건축기본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고찰 및 관련 법령 현황 조사 •전문가 면담조사 •해외 사례조사 •건축관련 법령 재정비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건축관련 법령 간 규정 내용의 문제점 도출 및 유형화 •해외 건축관련 법령의 현황 조사 및 분석 •건축관련 법령 간 재정비 체계 구축 •건축관련 법령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추진체계 수립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연구목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수립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고찰 및 관련 법령 현황 조사 • 관련 전문가 T/F팀 구성 및 실무협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제도 및 법제 체계 검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 법령 제정(안) 마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쟁점 도출 및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방안 제시

2)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선행연구를 보다 구체화하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가에서 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요 쟁점 도출 및 정책방향 마련, 그리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음

4. 연구의 기대효과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기여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및 통계 조사, 설계공모, 우수건축물 지정 및 지원,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건축진흥원 설립 등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

6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연구

제2장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주요 쟁점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목적 및 하위법령 위임 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4.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5.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지원기관 지정 및 설립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목적 및 하위법령 위임 사항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목적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¹⁾
- “건축서비스”²⁾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행위이며,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1. “건축서비스”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포함함

-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의 서비스산업을 의미함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기본체계 및 구성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기본체계³⁾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진흥법’의 입법특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계획 수립, 통계작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개발 지원, 사업지원, 진흥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과 주요 현안을 반영하여 발주방식의 다양화, 표준화 기반조성,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등이 추가됨
-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격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설계의도 구현 등이 추가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구성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총칙,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건축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보칙, 벌칙 등 총 7장으로 구성됨

[표 2-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구성

장구분	법조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7조(실태조사)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3)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29.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제15조(창업지원)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8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22조(설계제도 구현)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제26조(출연금) 제2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9조(보고 및 감사) 제30조(비밀 업무의 의무) 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보칙	제32조(조세의 감면) 제33조(자료제출)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과태료)

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법률안 중에서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조문은 다음과 같음
- 하위법령은 상위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조문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표 2-2] 하위법령이 필요한 법조문

구 분	하위법령이 필요한 법률의 조문
1장 총칙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7조(실태조사)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창업지원)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4장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22조(설계의도 구현)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제26조(출연금)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6장 보칙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7장 벌칙	제37조(과태료)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법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계획 내용 이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 기타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정방향

- 지식집약형 산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정책방향 및 상호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의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상호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⁴⁾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시행을 위한 절차 구체화

③ 하위 법령 마련 방향

- 건축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 등
 -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차기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등 평가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현황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포함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 관보에 고시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1.사업기간 변경이 2년 미만인 경우, 2.총사업비 변경이 계획의 10% 미만인 경우와 3.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미함
- 건축서비스산업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 등
 -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주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 및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3.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1) 실태조사

①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법 제7조(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태조사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대상 등을 제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

② 제정방향

- 지금까지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해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나, 엔지니어링 산업을 제외한 순수한 건축설계 산업은 어떠한 통계적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⁵⁾
- 건축설계산업의 진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은 정확한 통계자료의 구축으로부터 시작됨
- 산업진흥을 위한 기초자료로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③ 하위 법령 마련 방향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의 구체화
 - 주요 조사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 현황, 국내외 건축서비스 산업의 수주 및 매출에 관한 사항,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

5)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산업동향조사 실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며, 실태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함

- 또한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및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음
-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기, 조사 취지,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는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함

2)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법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현 시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에 있어 주요한 이슈를 도출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② 제정방향

- 산업동향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건축설계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조사 분석이 필요하며, 국내 건축설계산업의 현 실태 및 해외산업 현황과의 비교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관련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홈페이지(<http://www.kenca.or.kr>)를 통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수주실적순위 및 수주실적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통계조회서비스를 통해 산업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통계편람을 발행
 - 디자인산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에 근거하여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
- 법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2항에서 정보체계 구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하위규정에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도록 함

③ 하위 법령 마련 방향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관련 사항 제시
 - 정보체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등
 - 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공동개발, 관련 자료의 활용 등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제시

3)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법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제3항에 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법 제9조제3항에서는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하위규정에서 제시하도록 함
-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대상 선정 기준, 절차 등 방법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및 개발사업의 실시에 대해 기본계획 상의 연구·개발 시책에 따르도록 하고, 연구 및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정부와 협약을 맺은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 이에 따라 하위규정에서는 협약체결 방법과 공동연구 추진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시하도록 함
-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정방향

-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을 활용 및 지원할 수 있음
- 또한 연구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음

③ 현황 · 문제점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비 감소⁶⁾
 -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비는 2006년 1조 4,916억 원으로 1998~2006년 중 제조업의 R&D 지출은 연평균 14.5% 증가한데 비하여 서비스업은 연평균 5.8% 증가에 머물렀음
 - 민간부문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2.0%에서 2006년 7.1%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반면, 제조업의 R&D 비중은 1998년 80.8%에서 2006년 90.1%로 증가
 - 우리나라의 총 부가가치 중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2006년 현재 각각 57.1%, 28.0%임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이 제조업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
- 건축설계 기술경쟁력 부진
 - 우리나라 건설기술 수준은 선진국(100%)과 비교하여 67%의 수준이며, 특히 건축물의 기획, 설계, 유지관리 부문의 기술수준은 평균이하로 부진

6) 윤우진 외(2008),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산업연구원, pp.166-167.

[표 2-3] 한국 건설산업의 시설물/분야별 기술수준(기술선진국=100)

분야 시설물	종합기술	기획	설계	입찰	시공	유지관리
도로	74	73	74	78	76	71
교량	70	69	70	71	73	67
터널	70	83	84	78	76	71
지하구조물	66	62	65	67	71	66
상하수도	65	62	64	67	71	63
하천시설물	72	69	72	70	79	69
해안시설물	64	59	62	66	71	62
댐	68	61	64	71	73	68
플랜트	68	59	63	69	75	73
고층건축물	66	63	65	67	70	62
주거건축물	69	64	68	68	71	63
인텔리전트빌딩	59	53	57	60	65	59
건축설비	63	60	62	63	67	63
평균	67	63	66	68	72	66

* 출처 : 건설교통부 건설산업선진화기획단(2004.12) 「건설산업의 선진화전략」

- 핵심 기술력 취약 및 기술부문간 개별적 R&D 추진
 - 하드웨어적 시공기술 중심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져, 설계와 구조 설계, 제진·면진, 기계·전기·방재 설비 등 기초·원천기술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력 부족⁷⁾
 - 건축설계분야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기술력 강화와 유망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분야 등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는 R&D의 통합적 연계방안 모색 필요⁸⁾

④ 하위 법령 마련 방향

- 협약체결 방법의 구체화
 -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제2항에서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7) 국토해양부(2012),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2013~2017]」,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p.6.

8)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47.

- 제3항에서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시범사업 추진 방법의 구체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시범사업 실시 대상 및 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4) 건축서비스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①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법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정한 사항 이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에 관한 사항
-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② 현황·문제점

-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수많은 상품에 의해 조성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화 연구 및 보급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법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에 관한 규정에서는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하위규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시하도록 함
- 법에 제시된 이외에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 서비스사업자의 업무기준과 이에 따른 대가기준을 표준화하여 공정한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 확보가 필요함
- 무엇보다 기획업무에 대한 규정과 기준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기획업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업무내용에 따른 대가기준 마련이 시급함. 또한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 표준화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③ 제정방향

- 대가기준의 법적 위상 제고를 위한 법제도 여건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 표준화의 기본방향은 건축물 등에 사용하는 자재, 설계절차, 설계기준 등의 표준화 이외에 건축서비스 업무 및 대가기준으로 확대하여 시행령에 포함
-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업무기준과 이에 따른 대가기준을 표준화하여 공정한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하위법령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건축서비스 사업에 대한 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대가기준체계 개선 방향 설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사 업무항목 개선, 추가업무 대가 산출 및 지급 의무화 방안 마련

④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관련 해외사례 검토

[일본 대가기준 체계]

1) 설계에 관한 기본업무

구분	대항목	소항목
기본 설계	(1) 설계조건 등의 정리	① 조건 정리 ② 설계조건 변경 시의 협의
	(2) 법령사항 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법령사항 조사 ② 건축확인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
	(3) 상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등 공급 상황 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4) 기본설계 방침의 책정	① 종합검토 ② 기본설계 방침의 책정 및 건축주에 대한 설명
	(5) 기본설계도서의 작성	
	(6) 개산 공사비의 검토	
	(7) 기본설계 내용의 건축주에 대한 설명	
실시 설계	(1) 요구 등의 확인	① 건축주의 요구 등 확인 ② 설계조건 변경 시의 협의
	(2) 법령사항 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법령사항 조사 ② 건축확인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
	(3) 실시설계 방침의 책정	① 종합검토 ②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사항의 확정 ③ 실시설계 방침의 책정 및 건축주에 대한 설명
	(4)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	①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 ② 건축확인 신청도서의 작성
	(5) 개산 공사비의 검토	
	(6) 실시설계 내용의 건축주에 대한 설명	
공사 시공 단계	(1) 설계의도를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질의응답, 설명 등	
	(2) 공사재료, 설비기구 등의 선정에서 설계의도의 관점에서의 검토, 조언 등	

2) 건축물 유형 분류

건축물 유형	건축물 용도 등	
	제1종 (표준적인 건물)	제2종 (복잡한 설계를 요하는 건물)
1. 물류시설	차고, 창고, 입체주차장 등	입체창고, 물류 터미널 등
2. 생산시설	조립공장 등	화학공장, 약품공장, 식품공장, 특별설비를 갖춘 공장 등
3. 운동시설	체육관, 무도관, 스포츠집 등	실내 풀, 스타디움 등
4. 업무시설	사무소 등	은행, 본사빌딩, 청사 등
5. 상업시설	점포, 요리점, 슈퍼마켓 등	백화점, 쇼핑센터, 쇼룸 등
6. 공동주택	공영주택, 사택, 임대공동주택, 기숙사 등	분양공동주택 등
7. 교육시설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
8. 전문적 교육 및 연구시설	대학, 전문학교 등	대학 (실험시설 등을 갖춘 곳), 전문학교 (실험 시설 등을 갖춘 곳), 연구소 등
9. 숙박시설	호텔, 여관 등	호텔 (연회장 등을 갖춘 곳), 휴양소 등
10. 의료시설	병원, 진료소 등	종합병원 등
11. 복지·후생시설	보육원, 노인홈, 노인보건시설, 리허빌리 센터 등	다가능복지시설 등
12. 문화·교류·공익시설	공민관, 집회장, 커뮤니티센터 등	영화관, 극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연수소, 경찰서, 소방서 등
13. 단독주택(상세설계 및 구조계산이 필요한 경우)	단독주택	-
14. 단독주택(상세설계가 필요한 경우)	단독주택	-
15. 기타 단독주택	단독주택	-

3) 건축물 유형별 기본업무 인·시간수 약산표 (부분)

<제1종 업무시설>

(단위: 인·시간)

연면적		500㎡	750㎡	1,000㎡	1,500㎡	2,000㎡	3,000㎡	5,000㎡	7,500㎡	10,000㎡
설계	총합	1,000	1,200	1,400	1,700	1,900	2,300	2,800	3,400	3,800
	구조	460	560	640	790	910	1,100	1,400	1,700	2,000
	설비	340	450	540	700	850	1,100	1,500	2,000	2,400
공사 감리	총합	460	520	560	630	690	780	900	1,000	1,100
	구조	160	180	190	220	240	260	310	340	370
	설비	83	110	140	190	240	330	490	660	830

<제2종 업무시설>

(단위: 인·시간)

연면적		500㎡	750㎡	1,000㎡	1,500㎡	2,000㎡	3,000㎡	5,000㎡	7,500㎡	10,000㎡	15,000㎡	20,000㎡
설계	총합	2,000	2,400	2,700	3,300	3,700	4,400	5,500	6,500	7,400	8,800	10,000
	구조	460	560	640	790	910	1,100	1,400	1,700	2,000	2,500	2,800
	설비	340	450	540	700	850	1,100	1,500	2,000	2,400	3,100	3,800
공사 감리	총합	890	1,000	1,100	1,200	1,300	1,500	1,700	2,000	2,100	2,400	2,600
	구조	160	180	190	220	240	260	310	340	370	420	460
	설비	83	110	140	190	240	330	490	660	830	1,100	1,400

* 구조에 있어서 평면 및 입면이 부정형인 경우 등 특수한 형상의 건축물인 경우는 1.3, 연약지반 등 특수한 대지에 조성하는 건축물인 경우는 1.2, 특수한 부지와 특수한 형상의 경우는 1.4를 표준으로 하는 배수를 각각에 해당하는 업무인·시간수에 곱한 것을 표준 인·시간수로 함

* 설비에 있어서 중앙관리방식의 공조설비, 자동식 소화설비 등 기능수준이 높은 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경우, 1.4를 표준으로 하는 배수를 해당하는 업무인·시간수에 곱한 것을 표준 인·시간수로 함

* 기본업무 인·시간수는 일급건축사로서 2년 또는 이급건축사로서 7년의 업무경험을 가진 자가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인·시간수를 의미함

4) 설계대가 산정 방법

• 실비정액가산방식

- 설계대가= 직접인건비+직접경비+간접경비+특별경비+기술료 등 경비+각종 세금
- 직접인건비= 설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각각에 대한 <당해업무에 관해 필요로 하는 급여, 제수당, 상여, 퇴직급여, 법정 보험료 등의 인건비의 일당 X 기본업무에 소요되는 일수(日數)>의 합계액

• 약산법에 의한 방식(기본업무의 설계대가)

- 기본업무 설계대가 = 직접인건비×2.0 + 특별경비 + 기술료 등 경비 + 각종 세금
- 직접인건비 = 별표로 고시하는 <건축물유형별 기본업무 인·시간수> X <통상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 1인의 시간당 인건비>

⑤ 하위 법령 마련 방향

- 대가기준의 공정한 준수를 위한 법제도 여건 개선
 - 현행 대가기준 지급 규정(건축사법 제19조의 3)으로는 대가기준 준수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를 근거로 시행령에 관련 조항 신설

4.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1)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사항

①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법 제13((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조제2항에 규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해제 기준 및 절차,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전문인력 교육, 창업지원 등에 관한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과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제13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에 규정된 창업지원과 관련한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② 현황 · 문제점

-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해서 공공사업의 설계공모 시 공모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한편으로는 역량있는 건축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본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 제13조 제3항에 명시된 포상, 교육기회 부여, 창업지원 이외에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③ 제정방향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목적)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는 우수한 건축환경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인력양성기관의 지정과 지원, 포상, 교육, 창업 등의 전문인력 지원, 우수한 전문인력의 공공사업 우선참여제도 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이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
-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역량있는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전문인력 교육에 우선적인 참여 및 창업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해 공공사업의 설계공모 시 공모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 관련사례 검토

□ 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진흥센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에 근거

[표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법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추는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구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 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진흥센터]

- 기술정보 집약적 산업을 이끌 새로운 첨단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잠재적인 예비창업자를 지원
- 주요지원사업은 경영컨설팅 지원, 기술지원,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교육지원 및 상담회 개최, 기업간 네트워킹 강화지원, 자금 및 투자유치/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수행 지원, 정보지원, 시설지원 등임

* 보육공간형태 : 단일건물 - 건물층수 : 1 - 건물확보방법 : 전용 - 부지면적 : 2460㎡ - 보육실면적 : 1564㎡

목적실수	센터							
	총계	7월형	14월형	22월형	34월형	43월형	55월형	66월형
(보유수당)	39개	23	2	5	3	3	1	1
(운영수당)	39개	23	2	5	3	3	1	1
(공실수)	0개	0	0	0	0	0	0	0

부대시설	센터건물		개별시설	
	상업건물	1실	25㎡	행정실
시설지원실	1실	33㎡	회의실	50㎡
서버실	1실	25㎡	세미나실	132㎡
난방시설 : 개별시설 난방시설 :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장치 전력시설 : 구내 전력설비 이용 통신시설 : 전화 개별 신청, KT 및 무선지원				

이용가능한 편의시설마련업 = 도서관, 식당 및 카페, 의무실, 세탁실, 생활관, 내빈관, 노래방, 당구장, 도서관, 이용실, 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냉온수기 및 가판기, 은행 등 * 실험기기 및 기타 자재
 편의시설의 적합성 ○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광주광역시 첨단벤처기업특성촉진지구에 포함 되어 각종 정부지원 혜택이 있음 ◯ 교통 여건 - 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비아 IC에서 남해고속도로, 88고속도로 교차(서울 320.3km, 부산 270.6km) - 철 도 : 호남선 학남역(5km), 송정역(8km) - 항공 : 광주공항(8km) 이용

* 출처 : <http://bi.gist.ac.kr>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

[표 2-5]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법	시행령
<p>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늘리고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3.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공동활용을 포함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다.</p> <p>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p>⑧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⑨ 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설립
- NFEC는 범부처 연구시설·장비의 총괄전담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투자, 공동활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총괄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 NFEC는 장비활용·장비운영·장비이전·장비인력·장비교육·장비상담 등 6대 진흥사업을 추진

* 출처 : <http://www.nfec.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기본법에 근거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 창업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통한 운영/관리

[표 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 등

법	시행령
<p>제55조(지도신청 등) ① 경영 및 기술지도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도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중소기업청장은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56조(연수계획의 수립)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와 그 근로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실시할 연수계획 (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연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7조(연수실시기관) ① 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연수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중소기업진흥공단]

- 1) 주요 지원사업은 정책자금,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이 있음
- 2) 시설지원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원사업으로는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사업이 있음
- 3)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4) 융자범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매입, 경·공매에 해당하는 사업장 확보자금(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5)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단, 재창업자금 운전자금은 연간 10억 원, 20억 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7억 원
 - .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 원)
 -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 원
- * 출처 : <http://www.sbc.or.kr>

□ 서울디자인창작지원센터(서울디자인재단) 과학기술원

- 디자인 인력의 경쟁력을 높여 디자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서울디자인창작지원센터]

- 설립 목적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차세대 디자이너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디자인 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풍부한 디자인 인력의 경쟁력을 높여 디자인 산업 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내용
 - . 차세대 디자이너 발굴 및 사무공간 / 공동공간 제공
 - . 입주기업간 네트워크 및 협업지원
 - . 디자인활동 및 개발제품 홍보
 - . 비즈니스 매칭 / Business Service 제공
 - . 디자이너 전문화 교육 제공
 - . 해외마케팅 및 디자인 교류 지원
- 입주 지원 내용
 -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 센터 3층(전용면적 약 2,049 m²)
 - . 입주면적 : 개별사무공간 A형(29.7m²) 30개실, B형(14.85m²) 15개실
 - . 입주여건 : 임대료, 임대보증금(서울시 전액지원)
 - . 월 관리비: A형(약 30만원/월), B형(약 15만원/월), 3개월 분 관리비에 대한 보증금 선납 예정 (부가세 포함)
 - . 입주기간 : 기본 1년
 - . 연장기간 : 입주업체의 신청 및 평가에 따라 1년 단위의 입주기간 연장 가능(단,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동공간 : 회의실, 세미나실, 공동작업실, 물품보관실, 공동휴게실 등

* 출처 : <http://www.seouldesign.or.kr>

□ 지자체 관련 조례 및 제도 검토 : 역량있는 건축사 선정 및 공공사업 참여 범위

- 서울시 공공건축가, 공공조경가 제도 등

[서울시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1) (모집분야 및 인원)

계	디자인우수 신진건축가(사) (만45세이하)	총괄계획(MP,MA) 참여건축가/교수 등	기타 디자인우수, 건축상수상 도시계획, 조경, 정비사업 참여 건축가(사) 등
100명	30명	20명	50명

※ 단, '디자인우수 신진건축가(사)'는 45세이상이라도 본인이 신진건축가(사)임을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예외 인정

2) (주요업무 및 역할)

- 가. 정부(우리시)지원 정비계획(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수립 및 자문
- 나. 공공발주 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 다. 구릉지 등 특별경관구역의 기획 및 설계·자문
-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관한 기획 및 설계·자문 등

3)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4) (응모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나.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당해 사무소에 소속된 자 포함)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다.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라. 모집 관련 분야의
 - 건축계획(기획) 및 디자인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
 - 공공기관 시행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서울시 건축상 수상자
 - 중앙부처로부터 우수(신진)건축가로 선정된 자
 - 공공기관 및 국제현상 공모 당선자
 - 정비계획의 수립 및 단지설계 등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정비계획의 총괄계획가(MP,MA)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기타 디자인, 설계, 도시, 조경, 정비사업 분야에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사례]

1) 추진목적

- 공공건축물 기획단계에서 전문가 참여 보장 ⇒ 시민중심의 공공건물 건립 및 도시환경 개선
- 재개발·재건축시 사업성 위주의 정비계획 수립으로 도시경관 악화 ⇒ 지역특성에 맞는 사람중심의 계획 수립과 공공성을 배려하는 건축 추진

2) 서울시 공공건축가 선정 : 77명

- 신진건축가 35명, 총괄계획(MP/MA) 17명, 디자인우수 등 25명으로 구성

* 출처 : 보도자료, 2012. 2. 13(월), 공공건축물 수준 높일 '서울시 공공건축가' 77명 활동 개시

⑤ 하위 법령 마련 방향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해제, 지원 관련 내용 구체화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기관, 학협회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건축진흥원, 「고등교육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건축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의 구체화
 - 본 법은 무엇보다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기존 공공건축의 발주제도에서 공공건축 설계에의 참여기회가 적은 건축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함
 - 따라서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설정의 기본방향은 공신력 있는 포상 등을 통해 역량이 입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함
 -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설계공모에서 당선하거나 국내의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하고, 공모 대상을 제한하여 공공사업의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 최근 5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최근 10년간 국제공모전(해당정부발주 또는 UIA공인)에서 입상한 자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
 -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원프로그램 및 공공사업에의 참여 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과 관련한 홍보, 전시, 출판 등의 지원
 - 관계 중앙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원프로그램에의 참여 부여
- 창업지원 관련 내용의 구체화
 - 제15조(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에서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①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제2항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 제16조제5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현황·문제점

- 건축서비스사업자는 직원수가 10만 미만인 사업체의 비율이 전체 사업체 수의 87% 임⁹⁾
- 이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한 건축서비스사업 여건 개선이 필요함

③ 제정방향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은 소규모 건축서비스사업자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활동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여 건축서비스산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16조에 설치 근거를 명시함
 - 법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8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진흥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정 및 지원 근거와 해제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지정요건과 절차, 해제절차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명시함

④ 하위 법령 마련 방향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은 소규모 건축서비스사업자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활동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여 건축서비스산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제16조에 설치 근거를 명시함
 - 법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8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진흥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정 및 지원 근거와 해제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9)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원, p.iii.

- 지정요건과 절차, 해제절차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명시함
-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 신청 절차 등의 구체화
- 제16조제5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구체화
- 제17조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취소 절차 등의 구체화

3)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법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현황·문제점

-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점차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어 중소기업의 활로가 폐쇄되는 등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
-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규정 필요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당국의 정보와 수주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수주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정책, 법안, 금융, 재정 등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정보, 행정, 자금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필요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탁기관 또는 위탁단체 지정요건 설정 필요

③ 제정방향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 경쟁심화와 대형설계업체 위주로 시장이 개편됨에 따라 점차 활로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협조,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법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부가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규정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과 지원행위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제시하도록 함

④ 하위 법령 마련 방향

-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내용 구체화
 - 법 제19조에 제시된 지원시책 이외에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홍보, 국제세미나 참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출 보증 등 건축서비스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항 등을 포함
- (위탁기관 및 위탁단체의 지정 요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관련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등으로 지정요건 설정
-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탁기관 또는 위탁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진흥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4)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및 지원

①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법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우수 건축물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 우수 건축물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도록 명시

② 현황 · 문제점

- 종합적으로 설계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우수 건축물 지정제도는 부재
 - 우수 건축물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제도가 있으며, 설계의 우수성보다는 성능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와 같은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전자는 보전을 목적으로, 후자는 성능인증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건축물의 우수성을 평가 인정하는 제도와는 다른 성격
 -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인정제도로 각종 시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기반 없이 운영됨으로써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있으나 공신력과 지속성 담보 측면에서는 한계

③ 제정방향

□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 (우수건축물 지정 및 지원의 목적) 건축물은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이 시대의 표상으로 삼아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건축인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나아가 우수한 건축물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 건축가의 창작활동이 사회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형성에 기여하는 노력과 건축주, 시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건축서비스 산업 전반의 제작 의욕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문화발전에 공헌하고자 함

□ 우수 건축물 등 지정 및 지원 관련 하위법령의 제정 방향

-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우수 건축물 등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우수 건축물등 지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기준 규정 제시
 - 지정기준은 각종 시상제도에서 제시하는 준공기간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 보다는 건축물등의 설계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

- 이와 함께 우수 건축물등 지정제도의 공신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절차 규정을 제시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해 놓았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제시

④ 관련사례 검토

□ 국내 우수건축 시상제도 사례

-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포상제도로 다양한 시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시상제도는 일부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개별 협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시상제도는 종류에 따라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것도 있으나 인지도가 낮아 대중적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음

[표 2-7] 국내 우수건축 시상제도 운영 사례

명칭	공모대상	주최	주관	수여대상
한국건축 문화대상	우리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기능이 구현된 역작 발굴. 해당연도에 사용승인을 받은 작품	국도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	대한건축사협회	준공 및 계획 건축물
한국 건축전	-	대한 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
한국 건축가 협회상	매 해당연도에 완성된 건축 작품 대상으로 건축적 성취도가 높고, 기능이 완성된 작품	(사)한국 건축가협회	(사)한국 건축가협회 설계위원회	전년도 1년간의 완성작을 대상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	해당년도 이전 3년간 완성된 건축물 중 매 해당 설계 위원회나 본 협회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작	(사)한국 건축가협회	(사)한국 건축가협회 설계위원회	건축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더 좋은 공간을 위해 애쓰 시민과 그 공간을 대상으로 지자체, 법인, 개인, 시민 단체 등이 자유롭게 신청 및 추천.	문화체육 관광부	(사)한국 건축가협회	더 좋은 공간을 위해 애쓰 시민과 그공간
‘좋은건축’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	신축건물이 아닌 완공후 3년 이상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있는 건축 환경을 선정(건축, 토목, 조경, 환경 등)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	-	건축물
김수근 건축상	전문위원 4인의 추천	김수근 문화재단	-	건축가
젊은 건축가상	1개 이상 준공작품이 있는 45세 이하 건축가	문화체육 관광부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여성건축가협회	건축가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 1) 문화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을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2006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제정
- 2) 제정목적
 - 아름답고 쾌적하며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의 공간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주민과 더불어 창출하고 개선한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격려하고 널리 알리고자 신설
 - 인간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고려된 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한 지자체, 법인, 시민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 홍보를 통해 국민의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3) 평가기준
 - 주민의 삶, 시민의 공간, 지역문화의 확립에 기여한 구체적인 물리적 장소와 공간환경의 창조, 그리고 이의 실현화를 위한 마을, 도시, 지역 내 주민, 민간,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개별적 혹은 공동 계획 활동과 실현화의 노력 과정
 - 시민성과 지역사회성을 표현하는 좋은 행위와 문화적인 물리적 공간을 창조 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향상시킨 단체 및 기관의 개별적 혹은 공동의 구체화된 활동과 물리적 장소
 - 기존 자연환경의 훼손과 물리적 환경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친환경 복구 및 해결을 추진한 단체 및 기관의 개별적 혹은 공동의 구체화된 활동과 물리적 장소
 - 유·무형의 지역사회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을 역사적 문화공간으로 구체화하여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새롭게 확립한 단체 및 기관의 개별적 혹은 공동의 구체화된 활동과 물리적 장소
 - 기타 한국문화의 특성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일상 생활환경의 문화와 시민공간으로 완성시킨 단체 및 기관의 개별적 혹은 공동의 구체화된 활동과 물리적 장소
 - 기초 행정 단위(읍, 면, 동)나 그 보다 더 작은 마을, 거리 규모의 장소
- 4) 시상내용
 - 대통령 표창의 대상과 국무총리 표창의 최우수상을 각 한 작품씩 시상하기로 하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의 우수상을 네 개 제정하여 각각 '두레나눔상', '거리마당상', '누리섬터상', '우리사랑상'으로 명함
 - *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건축가협회(2007), "2007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상세 요강"

[일본 토목학회의 CEPD 시상제도]

- Civil Engineering Design Prize(CEPD)는 일본 토목학회 경관·디자인 위원회에서 제정한 상
- 2001년 처음 시행하였으며, 토목 관련 디자인상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음



Shintoyo Bridge



Waterside in Nogata, Onga River



Honcho & Gioncho Dori Street in Tsuwano

[그림 2-1] CEPD 2009년 수상작 사례

□ 국내 등록문화재 제도

-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가운데 근·현대의 상징적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등록문화재로 지정·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최근 건축물에 대한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있으며, 지정문화재만큼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등록되어 규제를 받는다는 인식이 높아 여전히 등록을 꺼리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의 효과는 크지 않음

[국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도]

- 1) (목적) 근·현대의 상징적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것을 폭넓게 등록,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양한 근대화유산(건조물)을 보존하기 위해 2001년 문화재보호법 내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 2) (운영체계 및 등록기준)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이 경과한 것 가운데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등록함(「문화재보호법」 제53조의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해 규정됨)
- 3) (지원방안)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 규정됨)

□ 관련 제도 검토 : 일본의 등록문화재, 경관중요건조물 지정 제도

[일본의 등록문화재 제도]

- 1) (배경 및 목적) 재개발사업에 의해 빠른 속도로 철거되는 근대건축물들의 유실을 막기 위해 근대 건축물 조사사업을 통해 1990년부터 근대화유산(건조물)의 종합조사를 시작, 1996년에 문화재 보호법 내 등록문화재를 신설하여 근대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2) (운영체계 및 등록기준) 국토의 역사적 경관에 기여하고, 조형의 규범이 되며, 재현하기 쉽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건축 후 50년이 경과한 건조물 가운데 문화재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등록함
- 3) (지원방안)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보존과 활용을 위해 수리에 필요한 설계감리비의 50%를 국가가 보조함. 또한 부지 지가세를 50% 감세, 가옥의 고정자산세를 50% 감세, 상속재산평가액을 30% 공제, 개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함

출처 : 문화재청(2007), 「근대 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연구」

[일본의 경관중요건조물 지정 제도]

- 1) (배경 및 목적) 2004년 경관법이 제정하고 경관상 중요한 건조물에 대한 지정제도를 운영, 이를 통해 경관계획구역 내 우수한 외관을 지닌 건축물을 보전하여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경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함
- 2) (운영체계 및 등록기준) 이는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을 고려하여 건조물(건축물 및 공작물)의 외관이 경관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경관행정 단체(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경관계획구역 내 경관중요건조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음
- 3) (지원방안) 경관법에 따라 지정된 경관중요건조물은 장기보전을 위해 수선 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2004년 건축기준법을 개정하여 현상변경에 대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세제 지원으로 상속세의 평가에 있어서 그 이용 상의 제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경관중요건조물의 수리·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 이는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와 수선에 관한 공사비의 2/3, 최대 600만 엔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4) (지정에 따른 의무) 소유자 관리의무에 따라 지정을 받은 건조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양호한 경관이 손해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건조물의 유지·보전·계승을 위해 지정받은 건조물은 지역의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므로 현상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함



□ 특정 성능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 사례

- 대표적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그 대상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설계의 우수성보다는 성능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우수건축물에 대한 지정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 1) (목적)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유도/촉진
- 2) (인증기준)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는 인증심사단의 심사(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와 인증심의 위원회의 심의 2단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는데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를 위하여 9개 심사분야 중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6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인 이상의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인증심사 기준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사는 9개 분야(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심사하고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으로 구분하여 4개 등급으로 인증함
- 3) (지원방안)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등급별로 개선부담금을 차등화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취득세와 등록세의 5%~15% 범위에서 경감 받을 수 있음. 또한 건물에너지효율등급과 친환경건축물 등급인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의 최대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

⑤ 하위 법령 마련 방향

- 제2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
 - 우수건축물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 우수건축물 지정 시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별표) 제시
 - 우수건축물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방식 및 절차 마련
 - 지정된 우수건축물에 대한 표시방법 제시

5.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1) 설계공모의 활성화

①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관한 사항과 절차 등 공모방식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 제3항에 따른 공모방식 비적용 건축물에 대한 사업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현황·문제점

□ 대부분의 공공건축 설계가 입찰가격으로 결정

- 건축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설계의 창의성·예술성 등을 위해 설계공모를 장려하고 있으나, 설계발주는 대부분 적격심사방식 채용
- 최근 6년(2007년~2012년)간 공공건축 설계용역 건수 5,493건(수의계약 제외) 중 설계공모는 961건(17.5%)에 불과하며, 금액규모로는 9%에 불과
- 5억 이상의 용역에서 적용되는 PQ,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평가 또한 실적과 가격입찰에 의해 설계자가 결정

□ 용역비 규모별 현황

- 중앙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최근 6년간 발주한 용역현황조사 결과, 수의 계약을 제외한 건축설계 용역 건수는 5,439건
- 1억 미만 소액 용역이 2,381건으로 전체의 43%이상을 차지하고 1억 이상 2.3억 미만이 약 17.9%, 10억 이상이 12%의 순으로 나타나며, 고시금액(2.3억) 미만이 61.5%를 차지하고 있음

[표 2-8] 건축설계분야 기준금액별 발주용역 현황

금액(억)	1 미만	1~2	2~2.3	2.3~3.8	3.8~5	5~10	10 이상	계
건수	2,381	822	149	632	296	501	658	5,439
비율(%)	43.6	15.1	2.8	11.7	5.5	9.2	12.1	100

□ 발주 방식별 현황

- 건축설계 용역의 발주방식은 가격입찰이 3,140건으로 가장 높으며 PQ+ 가격입찰, 설계공모 순으로 나타남
- 금액비중은 설계공모가 전체의 55%로 가장 높고 가격입찰은 건수에 비해 12%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 건축설계분야 발주방식별 용역 현황

구분	설계 공모	PQ+ 가격입찰	가격입찰 (PQ제외)	기술자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	협상형	던키	기타	계
건수	960 (17.7%)	1008 (18.5%)	3140 (57.7%)	207 (3.8%)	48 (0.9%)	16 (0.3%)	14 (0.3%)	46 (0.8%)	5,439 (100%)
금액 (백만원)	1,277,904 (55.4%)	466,627 (21.0%)	286,634 (12.4%)	85,647 (3.7%)	93,371 (4.0%)	15,764 (0.6%)	36,788 (1.6%)	24,433 (1.0%)	2,306,168 (100%)

□ 현행 설계공모 장려조항의 영향력 미흡

- 현행 건축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축설계에 대한 설계공모 장려조항이 있으나, 현장에 대한 영향력이 미흡한 실정임

[건축기본법]

제24조 (설계공모의 시행)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② 발주청은 제37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경우에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때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 해외에서는 가격 위주의 설계자 선정을 지양

- 일본과 미국의 경우, 건축설계는 물품구매나 시공과 달리 설계자에 의해 최종적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저가 가격입찰은 지양할 것을 천명

[일본 관공청 시설의 설계업무 위탁방식의 방향 (1991년)]

- 1991년 3월의 건축심의회 회답 ‘관공청 시설의 설계업무 위탁방식의 방향’에서는 설계자의 선정은 물품구입 등과 같이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함
- “건축설계는 설계의 내용과 설계의 결과가 미리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설계자에 의해 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관공청시설은 국민고유의 자산으로서 높은 질이 요구되기 때문에 설계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설계료의 저렴함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창의성, 기술력, 경험 등을 적절히 심사한 후에 그 설계업무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공모방식 우선적용, 사업자 선정 등 설계공모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 참가자격 제한, 과도한 제출물 요구,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미흡 등 현행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 개선 필요
 - 실적제한, 지역제한 등 설계공모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 사례 다수
 - 운영지침에 90일 이상의 공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 다수
 - 도판, 투시도 및 조감도, CG, 모형 등 과도한 제출물 요구로 인해 참여업체의 참여비용 부담 가중
 - 발주처 직원 과반수 이상 참석, 계획 및 설계 이외 전문가의 동일한 평가 등 심사방식의 전문성 및 공정성 논란 지속
- 설계공모방식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특성 및 지자체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적용이 가능해야 하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한계
 - 발주처는 공모기간, 비용, 심사 등 절차의 복잡 등을 이유로 설계공모를 기피하고, 설계자는 참여 비용 부담 가중으로 설계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
 - 설계안을 선정하는 발주와 설계자를 선정하는 발주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설계자 선정 이후의 불합리한 설계변경, 과다설계로 인한 공사비 증대 등의 문제점 다발
 - 설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응답자가 현상설계 당선 또는 기본계획 확정 이후 ‘불합리한 설계변경’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¹⁰⁾
 - 발주관계자 대상 인터뷰 조사에서 설계공모안의 실현성 문제 등 ‘과다설계’를 설계공모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등, 당선에 집착한 과도한 디자인 또한 추후 설계변경의 원인으로 작용¹¹⁾

□ 건축설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적격심사 입찰방식

10)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0),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 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66.

11)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0),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 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66.

- 현재 건축설계 관련 발주는 건설기술관련법에 의거하여 기술공사로 취급되고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도 건축분야와 기계·토목 등의 분야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건축분야의 특성상 책임건축사의 자격과 경력이 중요하지만, 참여 기술자 평가에 있어서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자격과 경력뿐 아니라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경력까지 평가
 -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15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업체들은 계획 및 설계관련 기술이 아닌 공법, 구조 등에 관련된 기술로 점수를 채우고 있는 실정
- 고시금액 미만 용역이 상당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고시금액 미만 사업은 수행능력에 비해 입찰가격의 비중이 매우 커 결국 가격에 의한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6년(2007년~2012년)간 공공건축 설계용역 건수 5,493건(수의계약 제외) 중 5억 이상은 22%에 불과, 특히 고시금액 미만이 61%를 차지
 - 고시금액 이상의 경우에도 5억 이하의 용역은 입찰가격의 비중이 수행능력보다 크거나 같은 수준임
- 적격심사에서 기술제안서 평가를 받는 건축설계 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설계 공모 평가기준을 준용
 - 참여업체들은 제안서이지만 현상설계안과 같은 수준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어 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③ 제정방향

- 설계공모 활성화를 위한 설계공모 방식 우선적용 및 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설계공모 의무화) 특정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모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공모방식의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용역비가 고시금액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건축설계는 설계공모 적용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

- 1) 설계비를 고시금액 이상으로 의무화할 경우,
 - 설계공모 건수는 17.7% (960건)에서 37.0% (2014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고, 설계비 금액 규모로는 55.4% (1,277,904백만원)에서 84.0% (1,938,281백만원)로 약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 설계비를 1억 이상으로 의무화할 경우,
 - 설계공모 건수는 17.7% (960건)에서 57.6% (3131건)로 약 3배 정도 증가하고, 설계비 금액 규모로는 55.4% (1,277,904백만원)에서 95.4% (2,199,994백만원)로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설계공모 비적용 사업의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의 마련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설계공모 적용 의무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방식(사업수행능력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턴키 등과 마찬가지로 건축정책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명백한 사유를 제시하고 이의 적절성을 심의하도록 규정

④ 하위 법령 마련 방향

-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관한 사항과 절차 등 공모방식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구체화
 - 제3항에 따른 공모방식 비적용 건축물에 대한 사업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 구체화
-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설계공모 의무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용역비가 고시금액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건축설계는 설계공모 적용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
 - 적격심사방식(사업수행능력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턴키 등과 마찬가지로 설계자문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명백한 사유를 제시하고 이의 적절성을 심의하도록 규정
- (설계공모 유도를 위한 지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발주자는 설계 공모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자에게 발주관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축설계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등에서 직격심사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평가기준 별도 마련

2) 건축설계의도 구현

①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제1항에 따른 설계자 참여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참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3항에 따른 설계자 참여 관련 내용 및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

② 현황 · 문제점

□ 설계의도 구현, 설계감리 내용 반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는 설계자가 설계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공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설계와 시공의 연계 유도를 통한 건축디자인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통한 건축물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특별건축 구역에 한정되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후설계관리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확대 적용할 필요
 - 건축법 제72조 8항에서는 특별건축구역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가 가능한 사후설계관리업무가 도입 되어 있음

건축법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③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 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사후설계관리 업무 내용이 포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대가기준 제6조 (설계업무) ④ 제5조제1호다목의 "사후설계 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

③ 제정방향

□ 설계의도 구현의 목적

- 설계의도 구현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설계자를 건축과정, 즉 시공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
- 우선적으로 설계의도 구현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 기준 제시 및 설계의도 구현 내용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 마련
- 설계의도 구현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명시

□ 설계의도 구현 대상 범위

- 우선적으로 설계의도 구현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 기준 제시 및 설계의도 구현 내용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 마련
- 기본적으로는 모든 건축물 등에 대해 설계의도 구현이 중요하나,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대상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강화
 - 기획에서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 내용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설계공모에 의해 기획 내용과 설계내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 등을 우선적인 적용대상으로 설정

□ 시공단계에서 건축사 참여 범위 설정

- 기존의 감리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 변경이 본 설계의도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정
 - 기존의 감리제도를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구분
 - 설계의도 구현은 설계감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건축물의 배치, 형태의 변경요청에 대한 자문 및 도면 작성, 건축 재료의 무늬, 색깔, 질감에 대한 결정과 변경요청에 대한 자문 및 도면 작성 등의 업무로 규정 필요

- 시공감리는 기존의 감리업무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지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로 규정 필요

□ 건축사 참여권한 담보를 위한 조치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감리의 내용 반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 필요
-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에 참여설계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

④ 하위 법령 마련 방향

- 제1항에 따른 설계자 참여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참여절차 등 구체화
- 제3항에 따른 설계자 참여 관련 내용 및 책임범위 등 구체화

3)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①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공공건축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법 제23조제4항에 사전검토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현황·문제점

□ 과도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용 증대 및 디자인 품질 저하

- 공공건축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논의되는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설계품질의 저하임
- 이는 사업기획 과정에서 충분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 단계에서 사업초기와는 다른 규모와 프로그램이 설정되거나 정책결정 권자가 바뀌어서 계획 방향이 변경되기 때문임
- 또한 각종 심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초기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설계안이

변질되는데, 이는 심의위원의 전문성이 미흡하거나 상반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위원회 구성원 등이 바뀌는 등 초기 기획 의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임

□ 기획단계에서의 사전검토 업무를 통한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 요구

- 구체성 있는 사업기획과 높은 설계품질은 건축물의 시공과 유지관리 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시설의 이용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침
 - 영국에서는 공공건축 조성비용과 시공기간의 10%를 절감하기 위해 기획단계를 내실화하고자 범부처 성격의 공간환경위원회(CABE)를 설립하고 『Design Review』 제도를 도입함
 - 프랑스에서도 독립적 정부기관으로서 MIQCP를 구성하여 공공건축 기획단계에 전문가 자문을 지원함
 - 일본의 관청영선부에서는 국가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관리업무를 지원함
 - 미국의 PBS에서는 국가 공공건축 기획단계 내실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와 프로그램디자인스터디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범정부 차원의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및 지원 기능 강화 필요

- 행안부문체부복지부 등 각 부처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공공건축물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문성 취약, 시설간 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에서 공공건축을 총괄 지원할 필요
- 공공건축의 사전검토 및 설계자문 등의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시분야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건축정책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공공건축 기획단계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며, 심의기능이 아니기에 발주처에 대한 제약이 아님

③ 제정방향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의 목적)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의 목적은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사업의 목적과 장소에

결맞는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음

-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은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시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다만, 사전검토 수요 및 사전검토 업무의 실현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영향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설계공모 적용 대상 건축물에 대해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 사전검토 시기는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된 이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시기와 동일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행

④ 관련사례 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 PIMAC

- 각 공공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야 함.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이며, 예외적으로 사안별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공공기관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1. 개요

- 1999년부터 시행되어온 재정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이면서, 국고가 300억 원 이상이 총족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타당성 검증이 시행됨.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평가를 공공기관이 임의로 지정한 기관에 의해 진행되어 객관성 및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옴.
- 이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및 공공기관의 적자·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에 제도마련 및 보완 준비를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바탕으로 2011년 상반기부터 시행함.

2. 대상사업

-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됨. 재정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하면, 총사업비 규정은 동일하지만 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의 부담분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라는 점이 차이점임.
-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한다. 사업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함.
- 면제사업
 -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재정 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도 해당되는 경우 재정부문 예비타당성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함.)

-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
- 재정부문의 간이 예비타당성조사처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성 분석, 수익성 분석등을 수행하지 않고 적정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만을 검토하는 사업적정성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출처 : <http://pimac.kdi.re.kr/>

□ 서울시 투·융자사업심사

- 2013년 8월 서울특별시투·융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 제8조 2항에 투·융자심사 시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관한 조항 신설
- 기타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운영 근거는 시장방침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 타당성검토 주요 내용은 ① 수요 및 공급추정의 합리성, ② 사업비용 검토, ③ 재무성분석(사업수입), ④ 경제성 분석(사업편익), ⑤ 계산과정의 정확성 등 검토의견 제시임
- 서울시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절차
 - 사업부서는 자체방침 수립 후 학술용역심의회(조직담당관) 또는 기술용역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를 거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센터의 연구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과제로 선정
 - 과제선정 위원회에서 수행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센터 수행과제로 미 선정된 사업은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으로 시행하여 센터에서 검증을 받음
 -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사업 중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가 100억 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⑤ 하위 법령 마련 방향

□ 시행령안

- 제23조제2항의 사전검토 대상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의 우선 적용 대상 건축물로 규정함.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검토 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시기를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으로 규정함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결과를 문서의 형태로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안)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건축물을 포함

[공공기관]

- 중앙정부 : 정부조직법 제 26조에 따른 행정각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 2조에 따른 단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건축 : 신축과 리노베이션을 모두 포함]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이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시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사전검토업무의 실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상 건축물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대상의 기준과 면제 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검토하고, 연간 발생 가능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업 수 검토

[공공건축 계약 건수(대한건설협회에서 제공한 2011년도 건설공사 계약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총 계약 건수 : 11,874 건
- 규모별 계약 건수
 - 500억 이상 : 48 건, 200~500억 미만 : 103 건, 100~200억 미만 : 119 건
 - 50~100억 미만 : 257 건, 10~50억 미만 : 1,749 건, 10억 미만 : 9,598 건

구 분	전체 건축공사				공공기관 발주사업				비율 (공공기관/전체)	
	건 수 (건)		금 액 (10억 원)		건 수 (건)		금 액 (10억 원)		건 수	금 액
500억 원 이상	253	0,56	28,940,3	36,33	48	0,40	4,560,6	27,14	18,97 %	15,76 %
200~500억 원 미만	397	0,88	12,334,7	15,49	103	0,87	3,255,7	19,38	25,94 %	26,39 %
100~200억 원 미만	519	1,15	7,204,9	9,04	119	1,01	1,657,0	9,86	22,93 %	23,00 %
50~100억 원 미만	1,048	2,32	7,339,2	9,21	257	2,16	1,755,1	10,45	24,52 %	23,91 %
10~50억 원 미만	7,256	16,07	15,097,5	18,96	1,749	14,73	3,764,9	22,41	24,10 %	24,94 %
0,5~10억 원 미만	24,237	53,68	8,535,1	10,71	6,141	51,72	1,745,4	10,39	25,34 %	20,45 %
0,5억 원 미만	11,443	25,34	208,5	0,26	3,457	29,11	62,8	0,37	30,21 %	30,12 %
소 계	45,153	100%	79,660,2	100%	11,874	100%	16,801,5	100%		

○ 용도별 계약 건수

- 주거시설(679건), 상업시설(193건), 업무용시설(3,752건), 호텔·숙박시설(26건), 학교(2,384건), 병원(159건), 종교·전통양식(101건), 공연·집회·전시시설(441건), 경기장·운동장(838건), 기타 시설(3,301건)

구 분	전체 건축공사	공공기관 발주사업	비율 (공공기관/전체)		
주거 시설	5,360 건	11,87	679 건	5,72	12,67 %
상업 시설	5,230 건	11,58	193 건	1,63	3,69 %
업무용 시설	6,332 건	14,02	3,752 건	31,60	59,25 %
사무용 빌딩	2,792 건		426 건		
관공서 건물	3,540 건		3,326 건		
호텔·숙박시설	791 건	1,75	26 건	0,22	3,29 %
학 교	4,125 건	9,14	2,384 건	20,08	57,79 %
병 원	769 건	1,70	159 건	1,34	20,68 %
종교 · 전통양식	801 건	1,77	101 건	0,85	12,61 %
공연 · 집회 · 전시	702 건	1,57	441 건	3,71	62,82 %
공연 집회시설	226 건		145 건		
전시 시설	476 건		296 건		
경기장 · 운동장	1,139 건	2,52	838 건	7,06	73,57 %
기타 시설	19,904 건	44,08	3,301 건	27,79	16,58 %
합 계	45,153 건	100 %	11,874 건	100 %	

○ 공공건축의 용도에 따른 우선순위 검토 안

- 1안) 관공서, 공연·집회·전시, 경기장·운동장, 노유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을 대상으로 할 경우 예상 검토건수는 약 4,600여 건
- 2안) 학교, 병원, 공연·집회·전시, 경기장·운동장 등과 같이 조성 수는 많지만,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디자인 관리가 어려운 공공건축을 대상으로 할 경우 예상 검토건수는 약 3,800여 건

[표 2-10] 용도별, 건축공사비별 건축사업 총 계약건수(공공기관+민간 합계) (단위 : 억 원)

구 분	~0.5 미만	0.5~10	10~50	50~100	100~200	200~500	500억 이상	합 계
주거 시설	507	3,440	863	145	102	149	154	5,360
상업 시설	574	3,360	1,084	120	45	36	11	5,230
업무용 시설	1,855	2,879	1,190	195	124	67	22	6,332
호텔·숙박시설	78	425	249	16	9	6	8	791
학 교	1,111	2,348	493	96	57	17	3	4,125
병 원	202	351	165	30	16	4	1	769
종교, 전통양식	126	435	192	33	8	5	2	801
공연, 집회, 전시	90	347	192	49	13	11	0	702
경기장, 운동장	271	607	209	26	7	17	2	1,139
기타 시설	6,629	10,045	2,619	338	138	85	50	19,904
합 계	11,443	24,237	7,256	1,048	519	397	253	45,153

- 공공건축의 규모에 따른 우선순위 검토안
 - 1안) 100억 이상 건축물로 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건축을 대상으로 할 경우 예상 검토건수는 약 270건
 - 2안) 50억 이하 건축물로 디자인관리가 미흡한 공공건축을 대상으로 할 경우 예상 검토건수는 약 11,347건
- 설계공모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대한 검토 안

※ 관련 통계자료(공공기관이 최근 6년간 발주한 건축설계 용역 건수, 수의계약 제외)

- 설계비 1억 이상인 건축물 수 : 3,058 건 (56.4%)
- 설계비 2.3억 이상인 건축물 수 : 2,087 건 (38.5%)

[표 2-11] 건축설계분야 기준금액별 발주용역 현황

금액(억)	1 미만	1~2	2~2.3	2.3~3.8	3.8~5	5~10	10 이상	계
건수	2,381	822	149	632	296	501	658	5,439
비율(%)	43.6	15.1	2.8	11.7	5.5	9.2	12.1	100

- 사전계획 사전검토 제외 대상 건축물(안)
 - 기본방향 : 타법에 의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은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

[면제대상(안)]

- 총사업비 관리 대상 건축사업 : 국가사업 중 총사업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건축사업 :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 지원규모가 300억 이상인 사업(단,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 시설은 제외)
- 타당성조사 대상 건축사업 : 지자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으로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사업 및 건축비 100억원 이상인 공공용 건물(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 특별시·광역시·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40억 이상 및 5억 원 이상의 홍보관, 시·군·자치구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및 3억 원 이상의 홍보관

- 면제 대상 건축물을 제외할 경우 사전검토 대상 건수 : 11,604건 (100억 원 미만)



[그림 2-4] 총공사비별 사전검토 대상 구분

- 사전검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초기에 사전검토 대상을 제한하되, 점진적인 사전검토 대상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시행령에서는 사전검토 대상을 폭넓게 제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검토 의무 대상을 별도로 고시
- 기타 사전검토 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지정기관 대상 확대 방안
 -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령상에 관계 공공기관에 대한 범위

제시를 통해 다수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가능

- 검토 대상 공공기관은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LH, 지방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있음

□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기 및 방법(안)

-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사업의 예산확정전과 예산이 확정된 이후 기본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는 방안이 있음
 -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확정 전에 검토할 경우 기획력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사업추진을 담보하기 어렵고 입법기술 상 어려움이 있음
 -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확정 이후, 기본계획 단계에서 검토할 경우 사업 추진이 확정된 사업에 한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고 입법 기술상 용이함



[그림 2-5] 사전검토 시기(안)

-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송부

□ 사업계획 사전검토 내용(안)

-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내용은 법 제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그 밖에 사업의 내용이 가시화 할 수 있는 기본구상, 및 배치와 평면 구상을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의 기획력을 제고

□ 사업계획 사전검토결과서(서식 안)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00호서식]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서	
건축구분	검 토 번 호
사 업 명	
신청기관	
부지위치	
부지면적	주 용 도
검토내용 및 의견	
<p>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전검토 사업계획 신청서는 상기의 내용과 같이 검토되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서를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공공건축지원센터장 (직인)</p>	

4) 공공건축지원센터

①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법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규정에 마련하도록 명시함
-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제2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현황 · 문제점

□ 공공건축의 중요성

- 공공건축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지역성과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시설로서 도시의 환경수준과 질을 결정하는데 기여
 - 공공건축은 전국 약 14만 3천 동, 지자체 전체자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공공건축의 예산이 증대되는 등 국·공유자산으로써 도시환경에 큰 비중 차지¹²⁾

[표 2-12] 2011년 중앙정부의 공공건축 관련 전체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9년 예산안		2011년 예산안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신축증축이전	22,174	71%	20,884	60%	30,243	64%
유지, 보수	8,920	29%	13,911	40%	17,127	36%
소계	31,094	100%	34,795	100%	47,370	100%

- 따라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주요요소인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이 매우 중요

12) 국내 국유재산 총액 중 건물재산은 35조 2,814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고, 전국 지자체가 보유하는 건축물 공유재산 규모 또는 24조원 규모

[표 2-13] 중앙정부 주요부처의 공공건축 관련 담당부서

구분	15부		2처		18청		기타 ¹⁶⁾		합계	
	기관수	구성비	기관수	구성비	기관수	구성비	기관수	구성비	기관수	구성비
과이상	8	53.3%	0	0	2	11.1%	2	40.0%	12	30.0%
계단위	3	20.0%	1	50.0%	3	16.7%	1	20.0%	8	20.0%
조직 미보유	4	26.7%	1	50.0%	13	72.2%	2	40.0%	20	50.0%
합계	15	100%	2	100%	18	100%	5	100%	40	100%

□ 공공건축 기획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형식적인 업무 수행

- 공공건축물의 입지, 용도, 규모, 예산 등을 결정하는 기획업무는 공사비용 절감, 시설물 이용률 및 사용성 향상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및 품격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업무이나 형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실정

③ 제정방향

-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④ 관련사례 검토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¹⁷⁾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속기관으로 국가의 예산관리와 재정투자사업을 평가하는 곳으로 2005년 법률 제7386호에 따라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KDI 부설 기관인 공공투자관리 센터를 발족함. 2008년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에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검토도 수행

16) 기타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17) <http://pimac.kdi.re.kr/>

- 공공투자관리센터¹⁸⁾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추진 근거
 -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수행기관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됨
 - (민간투자지원사업)민간투자지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근거한 대규모 민자사업의 타당성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총괄 지원기관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1, 기획재정부)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2011)」에 근거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I. 예산편성 기본 방향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
 -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자본투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자회사 신설·출자,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조는 최대한 억제한다.

(중략)

II.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중략)

③ 사 업 비

- 신규 투자사업·자본출자 예산은 관계법령상 기관의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한다.

18)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1999년 5월)됨에 따라 2001년 1월 KDI 내부조직으로 설립됨.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2005년 1월)에 따라 KDI 부설기관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족됨과 동시에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이관됨" (출처: 공공투자관리센터(2013.4), 「2012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pp.3-4.)

- 신규 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반영하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다.
- 다음 각호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재해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
 3.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 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업

※ 신규 투자사업·자본 출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

○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업무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이 종료된 재정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수익률 및 추진방안의 타당성 등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시스템의 구축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사업성과평가업무,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 등 재정투자평가업무,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및 실시 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등 민간투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투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¹⁹⁾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설립 이후 478건, 215조원 규모의 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사업타당성이 낮은 190건, 100조원의 사업 추진을 억제해 예산 절감에 기여. 2003년부터는 조사 관료한 사업의 진해 중에 타당성 재심사를 실시 해 재정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예산낭비 방지에 공을 세우고 있음²⁰⁾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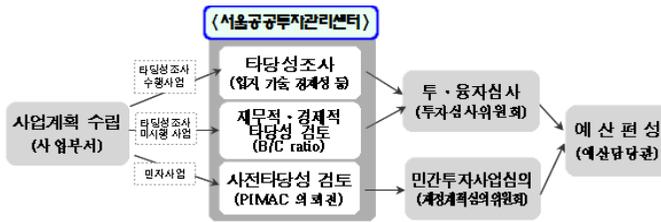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시행계획(2010)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침 연구(제1판),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연구 수행 중)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19)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책사업관리를 강화하고자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로, 철도, 항만 등의 분야를 넘어 최근 정보화, 연구개발(R&D)분야까지 확대됐으며 500억 이상의 공공사업은 의무로 검토받도록 정해짐

20) <http://blog.naver.com/happycodeg?Redirect=Log&logNo=10103924424>

□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 서울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전담기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타당성조사, 재정투·융자심사, 민간투자사업심사의 전문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전문적·독립적 평가기관으로 설립
- 추진 근거 : 「시장공약 및 서울시정운영 계획」
 - 독립된 투자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투자평가시스템 혁신(시장공약 6-2-1)
 - 공공투자관리의 타당성검증 강화(희망서울시정운영계획 1-3)
- 설치 근거 : 「시장방침(재정담당관-3179)」에 따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서울연구원에 설치
-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 및 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지침 등」
 - 2013년 8월 「서울특별시투·융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 제8조 2항에 투·융자심사 시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관한 조항 신설
 - 기타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운영 근거는 시장방침 및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 주요 기능
 - 대규모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센터에서 일관적으로 수행: 법적 의무 타당성조사(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와 그 외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주요사업의 타당성조사 기관을 센터로 일원화
 - 투자심사 사전절차로서 센터의 재무적·경제적 타당성분석 검토 절차 신설: 5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과 3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민간투자사업의 사전 타당성검토와 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 및 협상지원
 - 타당성검토 결과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로 신뢰성 제고 : 외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적정성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검증



[그림 2-7]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기능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2012.5.11., p.7.)

○ 주요 업무

- 타당성검토 : 사업부서가 투·용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정담당관이 재무성·경제성 분석에 대한 검토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요구하고, 센터는 타당성검토를 실시
- 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법적 의무사업 및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
- 타당성검증 : 투·용자심사 의뢰를 위해 수행한 타당성조사 중 센터 이외 타 기관에서 수행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평가서: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²¹⁾

-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은 재무성·경제성 분석을 설명해주는 자료이면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평가서로 연구·개발
- ‘서울시 투·용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일반)’과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됨

[서울시 지방재정 투·용자사업 심사를 위한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1. 서울시 투·용자사업 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일반)
 - 서울시의 투·용자심사의 수행체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의 의미, 분석 범위 및 적용대상
 - 비용 및 편익 추정 방법 및 가이드라인
2. 분야별 가이드라인(①문화 체육, ②일반행정 및 산업, ③보건·복지 ④도로·주차장, ⑤환경·에너지)
 - 대상 시설의 개요 및 유형
 - 분야별 수요 및 편익추정의 방법
 - 분야별 비용 추정 방법
 - 분야별 사례연구 및 분석방법의 예시 제시

2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2013.10), 「서울시 지방재정 투·용자사업 심사를 위한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pp. 10-11.

□ 해외 유사사례 검토 : 해외의 공공건축 전담기구 사례

- 해외에서도 공공건축 조성체계의 문제와 업무수행의 전문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건축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획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공공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전담 기구를 운영 중에 있음

[표 2-14] 해외의 공공건축 전담기구 운영사례

구 분	영국 CABE	프랑스 MIQCP	미국 PBS	핀란드 국유재산관리소
설립위치	총리산하 독립적 정부기관	독립적 정부기관	연방정부 조달청 국가 서비스국 소속	재정부 소속
개 요	• 공공건축물 및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독립적 자문 제공	• 공공건축물 발주과정 및 절차개선 • 설계과정 자문	• 공공건축물 조성과정 지원 • 공공시설 임대 및 유지관리	• 국가 소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관리 및 임대
조직유형	• 외부자문형	• 외부자문형	• 중앙부처 내부 자문 사업관리 복합형	• 중앙부처 소속 공공 기관 사업관리 복합형
지원대상	• 주거 • 공공건축물 • 공원 및 녹지공간 등	• 중앙 및 지방정부 발주 공공건축물 • 사회 기반시설 • 공공공간	• 청사 • 통관항 지역 • 연구소 및 특별시설 • 역사적 건축자산	• 부처 및 특별자산 • 청사 • 국방 및 안보시설 • 개발부지
지원 내용	기획	•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사업타당성 검토 • 조달계약 업무지원 등	•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사업의 정치·문화 경제적 가치 분석 • 기획안 검토 등	•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사업현황 분석 • 지역개발 지침서 개발 • 사업타당성 검토 등
	설계	• 설계자 선정지원 • 디자인리뷰 운영	• Jury제도 운영	• Design Excellence 제도 운영
	시공	-	• 문제 발생시 중개	• Construction Excellence제도 운영
	유지 관리	-	• 시설이양	• 건물운영, 보증 및 임대 서비스 • 시설 처분 등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체계를 위한 지원	• 지침서 개발 • 우수 사례집 발간 • 행정가 능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규제, 지침 개발 및 배포 • 효율적 설계공모 경 기방식 연구 등	• 규제, 지침 검토 및 교육 • 행정인력 교육 프로 그램 운영
공공건축가 운영	• Enablers, 디자인리뷰 패널 및 지역대표 약 400인	• 민간 건축 컨설턴트 관리·운영	• 국가건축가 임명 • 전문가 평가단 운영	• 조직 구성원 다수가 경력직 공무원 또는 부동산업 전문인
필요 운영인력	• 설립초기 행정인력 5인, Enablers 약 10인 • 2010년 조사 CABE 총 행정인력 125인	• 조직 설립 초기 총 12인, 현재 조직과 유사	• 본부 및 지역사무국 총 7,005인 근무	• 2009년 조사 본부 및 지역사무국 총 281인 근무

* 출처 : 서수정 외(201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 vii.

⑤ 하위 법령 마련 방향

□ 시행령안

- 제2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
-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무 대상 공공건축물의 범위, 제23조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범위

- 공공건축가 육성 및 파견을 통한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
 - 공공건축 사업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 설정, 사업계획의 검토,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및 디자인관리방안 제시, 발주방식 선정 등을 수행하는 공공건축가 지원체계 운영
 - 공공건축가와 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및 설계공모 대행
 - 기획단계에서 설정한 기본구상이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전문가패널로 구성된 디자인검토제도 운영
 - 기획업무 지원 과정에서 설계공모방식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부서의 행정업무 부담으로 추진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 설계공모 대행 업무 지원
- 공공건축 사후평가 및 공공건축 DB 구축
 - 기획부터 공사완료에 이르기까지 공공건축 조성 전 과정에 대한 수행성과 파악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공공건축사업의 사후평가 실시
 - 정책수립 및 유사사업 수행 시 활용을 위해 시설유형별, 지역별 조성현황, 노후도, 조성시기, 면적, 투입예산 등 공공건축 관련 DB 구축관리
- 공공건축 관련 각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공공건축 조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우수사례, 조성과정에 대한 안내 등 참고 자료로서 다양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센터를 통해 파견된 공공건축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과정과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시설유형별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 홍보자료 축적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지원기관 지정 및 설립

①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 법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사업, 건축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출판 및 홍보 사업, 교육·연수 사업,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는 건축진흥원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음
- 건축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내용, 출연금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제26조제2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방식에 관한 사항
 - 제28조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현황·문제점

- 건축서비스사업자는 직원수가 10만 미만 사업체 비율이 전체 사업체 수의 87%로 이들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한 건축서비스사업 여건 개선이 필요함
- 건축서비스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연구, 정보체계 구축 및 창업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전담기관이 필요
- 특히,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관련 교육시행 등 전문적 산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 설치가 불가피함

③ 제정방향

- 법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에서 제31조(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까지 건축진흥원 관련 규정에서는 건축진흥원 설립 또는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진흥원의 주요 업무, 출연금,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고, 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 즉 건축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내용, 출연금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관련사례 검토

□ 타법·시행령 및 관련 사례검토 : 설립 및 지정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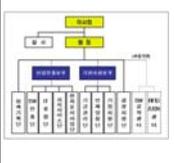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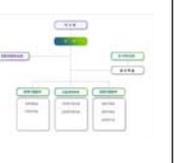
-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진흥원은 24개가 설립, 운영중에 있음
 - 대부분의 진흥원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상태임
 -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일하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나, 이 또한 각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 산하에 각각의 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탁운영한 사례는 없는 실정임
 - 타법에 의해 설치된 진흥원 중 지정되어 운영중인 진흥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관련 사례검토 : 수익사업

- 수익사업이 가능한 진흥원은 5개이며, 대부분의 진흥원은 연구 지원, 사업 지원, 인력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수익사업 실시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정보통신산업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자수의 등을 통해 재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규모는 1조원이상으로 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자산운용위원회 등을 두어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 진흥원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은 초기부터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 및 보조금을 통해 지원 및 육성을 우선시해야 할 것임

[표 2-15] 수익사업이 가능한 진흥원 사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 진흥원	유아교육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근거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근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근거 :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3조의2(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근거²²⁾ : 유아교육법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시행령 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각 광역지자체의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기관 :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기관 : 교육부, (및 각 광역지자체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1,236,590 백만원 - 위탁수입 74,157 백만원 - 기타사업수입 4,326 백만원 - 기타 1,161,372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432,032 백만원 - 출연금 331,014 백만원 - 보조금 6,771 백만원 - 사업수입 28,792 백만원 - 부대수입 1,216 백만원 - 차입금 31,733 백만원 - 기타 32,506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74,211 백만원 - 출연금 45,762 백만원 - 보조금 77 백만원 - 사업수입 28,237 백만원 - 부대수입 85 백만원 - 기타 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9,602 백만원 - 위탁수입 8,805 백만원 - 보조수입 797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확인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 지원 -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체계적인 운영관리시스템 운용 - 산업기술기반 조성(인력 양성, 산학협력, 신기술문화조성, 장비구축·관리) - 산업기술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산업기반 조성 - SW산업경쟁력 강화 - IT융합·활용 촉진 - 지식서비스 산업기반 구축 - 누리꿈스퀘어 운영 - 산업기술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수립 및 개발 - 동향조사 및 출판, 전시, 홍보 -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 로봇윤리현장의 실행 및 홍보 - 시범사업 및 보급, 확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로봇제조에 대한 지원 - 품질인증사업 - 표준의 연구개발, 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 신뢰성 인증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과학R&D사업 지원 - 전략사업 육성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R&D 사업관리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 유아 체험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사업 - 확인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사업 - 기금조성 후 수익 (홈페이지 확인)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사업 - 확인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사업 - 확인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사업 - 확인어려움
				

⑤ 하위 법령 마련 방향

□ 시행령안

- 건축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 수익사업계획서 제출 일정, 실적서 및 결산서 제출 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건축진흥원 신규 설립시 재정소요 예측(안)²³⁾

- 진흥원 조직은 진흥원장 1인, 기획관리본부 4인, 건축연구본부 4인, 건축사업본부 6인 총 15인 규모로 가정



[그림 2-8] 건축진흥원 예상 조직도(안)

- 인건비는 기관의 성격이 비교적 유사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0년도 1인당 평균임금 5,200만원²⁴⁾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

2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23) 신영수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신영수의원 대표발의” p.44.

24) 한국디자인진흥원 2010년 1인당 평균연봉 (단위: 백만원, %)

	1인당 평균연봉	인건비 대비 경상비 비중
한국디자인진흥원	52	87.3

* 출처: 공공기관 알리오(2011.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금상승률 전망치²⁵⁾를 적용하면, 2013년 9억 4,400만원으로 추정

- 정상운영비(기본경비 및 기본사업비 포함)의 운영비 비중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중 87.3%를 적용하면 2013년 8억 2,400만원으로 추정
- 임차료
 - 임차료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에서 제시한 각종 산업 진흥기관의 소규모(70인 이하) 사무공간 1인당 임차면적 74.5㎡(22.55평)을 적용하면, 총 1,117㎡(338평)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
 - 임차료는 2010년 6월 30일 기준 서울 기타 지역 평균 환산임차료 14,500원/㎡을 반영하고, 연평균 임차료 상승률은 최근 5년간 서울 기타지역 임차료 상승률 3.0%²⁶⁾를 적용
 - 따라서 1,117㎡의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억 1,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사무용품, 기타물품 등 각종 자산을 취득하는 비용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에서 제시한 학예진흥기관의 2006년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651만원을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²⁷⁾을 반영하여 건축진흥원 15명의 자산

25) NABO 임금상승률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명목임금상승률	7.7	6.2	5.8	5.5	5.6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1.04),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p.57.

26) 서울지역 임차료 추이 (단위: 천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상승률
서울지역 임차료	12.9	13.0	13.7	13.8	14.5	3.0

* 출처: 국토해양부,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2011.04), 「2010년 4/4분기 및 연간 오피스 매장용빌딩 임대료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 결과 보고서」

27) NABO 물가상승률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물가	4.1	3.2	3.1	2.9	3.1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1.04),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p.57.

취득비를 추정하면 약 1억 2,700만원임. 동 비용은 취득한 자산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취득연도인 2013년 한 해에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건축진흥원 설립 시 인건비, 경상운영비, 임차료 및 자산취득비를 합산하여 2013년에는 17억 6,800만원,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98억 8,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비용추계 산식]

- 건축진흥원 설립 소요 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경상운영비 + 자산취득비
- 인건비 = 한국디자인진흥원 평균인건비 × NABO 명목임금상승률 × 15인(직원수)
= 5,200만원 × (1+7.7%) × (1+6.2%) × (1+5.8%) × 15 = 9억 4,400만원
- 운영비 = 인건비 × 인건비 대비 경상비 비중
= 9억 4,400만원 × 87.3% = 8억 2,400만원
- 임차료 = 산업진흥기관 사무공간 평균평수 22.55평 × 15명 × 임차료 상승률
= 22.55 × 15명 × 14,500원 × (1+3.0%) × (1+3.0%) × (1+3.0%) = 2억 1,200만원
- 자산취득비 = 6.51 × 15인 × 물가상승률 = 1억 2,700만원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해설

1. 총칙
2.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3.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4.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5.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6. 보칙 및 벌칙

1. 총칙

1) 법 제1조(목적) 관련 하위법령

① 시행령 제1조(목적)

[표 3-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조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시행규칙 제1조(목적)

□ 해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 하위법령

① 시행령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표 3-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p> <p>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p> <p>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가. 국가기관</p> <p>나. 지방자치단체</p> <p>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p> <p>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p> <p>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p>	<p>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p> <p>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p> <p>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p> <p>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 개요

-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위임된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경미한 사항"을 규정
- 법 제5조제6항에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관해 위임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및 차기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등 평가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포함함
- 기본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기본계획의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 관보에 고시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1. 사업기간 변경이 2년 미만인 경우로 규정

② 시행령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표 3-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 3.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	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p>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개요

- 법 제5조 제4항에서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관해 위임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주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

③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표 3-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 3.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p>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p> <p>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6. 제13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p> <p>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p> <p>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p> <p>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p> <p>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개요

-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 해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
-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명시

□ 타법 사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따른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표 3-5] 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p> <p>①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4조(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각 중·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산업정책의 중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선 사항 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계획 4. 분야별 문화산업진흥사업 세부계획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p>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표 3-6]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공급(需給)·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7. 건설기술용역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p>	<p>제6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은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p> <p>제7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3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 총사업비를 처음 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기본계획」

[표 3-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기본계획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①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p>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7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해당 연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 4. 제출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p>4.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p> <p>2.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p> <p>④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검토 및 사전 조정을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 기본계획’

[표 3-8] 건축정책 기본계획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③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p>	<p>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법 제11조제1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p> <p>2.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배경 및 목적</p> <p>2.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p> <p>3. 소관별 계획의 작성요령</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p> <p>2.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p>

<p>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 간의 상충 여부 4.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소관별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 재원의 확보 가능성 <p>④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이 있는 각종 통계자료·보고서·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p>제3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1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	--

2.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1) 법 제7조(실태조사) 관련 하위법령

[표 3-9]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7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 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임금 수준 5.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현황 6.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7.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 개요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

□ 해설

- 제1항에서는 실태조사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하도록 규정
- 실태조사에서는 1.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수주(受注) 및 매출 현황 3. 성별을 포함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분야별 종사자 현황 4.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임금 수준 5.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현황 6.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등을 포함함

□ 타법 사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표 3-10] 문화산업통계 조사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실태조사 내용

[표 3-11] 엔지니어링 산업의 실태조사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2. 엔지니어링 수주 및 매출 실적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상태 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금 실태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면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p>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 날짜 및 시간 2. 조사 취지 3. 조사 내용 4.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	---

2) 법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관련 하위법령

[표 3-12]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조(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집·보유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 개요

-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및 활용성 제고 방안 등을 규정

□ 해설

- 제1항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
 - 이는 1.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함
-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으로 위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구축된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규정

□ 타법 사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1. 문화상품·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할 것
 3.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출 것
 4. 최근 3년간 관련 평가 실적 또는 유사 업무 경험이 있을 것
 5.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출 것
 6.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평가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표 3-13] 엔지니어링 산업의 정보체계 구축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수집·보유한 조사 자료 및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 「건설기술 진흥법」

[표 3-1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p>제29조(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p>	<p>제13조(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이나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 관련 업체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및 표준화</p> <p>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p> <p>5.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p> <p>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관리,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 2제7항에 따른 경비 또는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p> <p>⑥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5항에 따라 수립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경비 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p>	
---	--	--

[표 3-15]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현황 통보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①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p>	<p>제47조(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p>	<p>제23조(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 영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등의 통보와 설계 등 용역</p>

<p>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건설기술 용역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현황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p> <p>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기술 부문 및 전문 분야 5. 보유 기술인력 <p>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개정 2013.2.20,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설계 등 용역계약의 성립, 변경(참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설계 등 용역의 준공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p><신설 2013.2.20, 2013.3.23></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신설 2013.2.20, 2013.3.23></p> <p>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요청하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개정 2013.2.20, 2013.3.23></p> <p>⑥ 제5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 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개정 2013.2.20, 2013.3.23></p>	<p>수행실적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통보서: 별지 제24호서식 2. 설계 등 용역의 계약성립, 계약변경 또는 준공 통보서: 별지 제25호서식 3. 설계 등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별지 제26호서식 <p>②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 현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용역 수행 현황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용역 현황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	--	---

○ 「건축기본법」

[표 3-16] 건축기본조사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16조(건축 기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에 관한 각종 통계, 건축물 현황, 건축에 관한 인식도 및 기대수준, 그 밖에 제15조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1항의 조사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 선진국의 건축 현황과 건축정책에 관한 사항 2. 건축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전망 3. 건축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양성·활동 및 해외 진출 등 현황 4.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건축문화유산의 유지·관리 및 보존 현황 6.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에의 지원 실태 7. 그 밖에 법 제15조에 따른 국회 보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관련 하위법령

① 시행령 제7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등)

[표 3-17]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사업 협약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공동연구·개발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건축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사업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과제 개요 3. 연구·개발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p>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를 공동연구에</p>

	<p>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p> <p>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

□ 개요

- 법 제9조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시행령 제2항에서는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과제 개요, 3. 연구·개발의 공동 수행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 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제3항에서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 제4항에서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제5항에서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협

약의 체결 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② 시행령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표 3-1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 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자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p>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 공공기관이 시범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예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 개요

-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
- 시범사업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사업 및 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시범대상 사업은 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개발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의 적합성, 2. 시범사업의 자원조달계획이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시범사업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1. 시범사업 계획서 2. 공공기관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타법 사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표 3-19] 문화기술 연구·개발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17조의5(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 연구 3. 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4. 문화기술 분야의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기술 제휴 5. 문화기술의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연구 주관기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개발 조직·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①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한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내용 등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표 3-20]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① 정부는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및 보급하도록 한다.</p> <p>③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p>	<p>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p>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p> <p>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p> <p>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산·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사업</p> <p>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p> <p>7. 그 밖에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7조(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이 필요한 사업일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	---

○ 「건설기술 진흥법」

[표 3-21] 건설기술의 연구 및 개발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7조(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p> <p>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의</p>	<p>제30조(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16조제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p>제14조(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30조 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협회·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각 협회,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각 공제조합 및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 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p>설치·운영이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p> <p>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이 되는 기관</p> <p>2. 건설업자</p> <p>3. 건설기술용역업자</p> <p>제9조(공동 연구·개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건설기술 획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건설기술연구기관의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p> <p>제11조(기술평가기관) ① 정부는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p> <p>③ 기술평가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p> <p>2.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 예측</p> <p>3. 건설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p> <p>4.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된 사업</p> <p>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⑤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p>	<p>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p> <p>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헌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연구·개발계획</p> <p>2. 연구·개발과제(요약)</p> <p>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p> <p>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p> <p>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p> <p>6.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p> <p>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p> <p>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p> <p>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p> <p>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p> <p>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p> <p>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 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p> <p>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p>
--	--	---

<p>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	--	--

[표 3-22] 건설기술 시범사업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에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제12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제36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p> <p>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발주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건축기본법」

[표 3-23] 건축정책 관련 조사·연구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법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관련 하위법령

[표 3-24] 표준화 기본조성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계정보·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 2.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 대가기준의 표준화

□ 개요

- 법 제10조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 관련 사항을 규정

□ 해설

- 법에 제시된 이외에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서비스 사업자의 업무기준과 이에 따른 대가기준을 표준화하여 공정한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 확보가 필요함
- 무엇보다 기획업무에 대한 규정과 기준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기획업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업무내용에 따른 대가기준 마련이 시급함
- 이를 위해 설계업무의 표준과 및 대가기준 표준화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1.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 2.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 대가기준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함

□ 타법·시행령 사례 검토 : 타법에 의한 표준화 기반조성 관련 내용의 검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 기술의 표준화

[표 3-25] 엔지니어링 기술의 표준화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p> <p>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p>제20조(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1. 전문기관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p> <p>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p> <p>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p>	<p>제3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사업 추진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p> <p>2. 사업자등록증 사본</p>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기술에 있어서 설계 등의 표준화

[표 3-26] 건설기술에 있어서 설계 등의 표준화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77조(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3제1항에 따른 설계 등의 표준</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생산 또는 시공 과정에서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절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p> <p>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제1항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표준화 종합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설계 및 시험시공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p>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p>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타법·시행령, 고시, 기준 사례 검토 :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관련

- 「건축사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사후설계관리 업무 내용이 포함

※ 건축사법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관련 법조문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대가기준’ 내 사후설계관리업무 내용

제6조 (설계업무) ④제5조제1호다목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1) 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하위법령

① 시행령 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표 3-27]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p> <p>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건축진흥원(이하 "건축진흥원"이라 한다)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건축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7. 그 밖에 건축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p>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훈련 인력·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2.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 개요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과 절차를 규정
- 시행규칙에서는 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정 기준 및 지정신청서 작성 기준, 절차 등을 규정

□ 해설

- 제1항에서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명시함.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대상은 건축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 등을 기 시행하여 교육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임
 -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건축진흥원(이하 "건축진흥원"이라 한다)
 -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건축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그 밖에 건축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지정절차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 요건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면 공고하도록 함
- 제2항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함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1. 교육·훈련 인력·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2.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훈련 평가계획서,

- 3. 교육·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등의 사항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식에 따른 건축서비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② 시행령 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표 3-28] 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p> <p>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최근 10년간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p>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건축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 개요

-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규정

□ 해설

- 역량있는 건축사는 공공에서 시행한 설계공모에 당선되거나 국제공모 등에 입상한자로 그 역량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자로 규정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 최근 10년간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2) 법 제15조(창업지원) 관련 하위법령

[표 3-29] 창업지원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제15조(창업지원)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4.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창업지원)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 개요

- 법 제15조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

□ 해설

- 법에서 정한 창업자금,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및 고가장비에 대한 사용권 이외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서비스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함
 -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 공공·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 타법 사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7조(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성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성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투자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의 알선과 경영 자문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8.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4호의 투자조합자금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포함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표 3-3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창업지원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제9조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기술지도 4.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및 보유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5.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 등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 자금

	<p>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p> <p>8. 「여성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여성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p> <p>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p> <p>10.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p> <p>11.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p> <p>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	---

3) 법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및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관련 하위법령

① 시행령 제13조(진흥시설의 지정 등)와 시행규칙 제4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

[표 3-3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서울특별시외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할 것</p> <p>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p> <p>3.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건축서비스사업 시설로 사용할 것</p> <p>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2. 모형제작 등을 위한 공동 작업실의 사용 3.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홍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 개요

- 법 제16조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진흥시설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시행령 제1항에서는 진흥시설 지정 요건을 제시하였으며, 여러 사업자가 입주하는 것을 전제로 최소 입주자수를 5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설의 최소 규모도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여 시설의 쾌적성과 효율성을 도모함
- 또한 중소기업자가 전체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축서비스사업자를 육성, 지원함
- 절차와 관련해서는 진흥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 기준에 맞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
- 시행규칙에서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지정신청서의 내용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② 시행령 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취소)

[표 3-32] 진흥시설의 지정취소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제14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법 제1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요건을 갖추 것을 요구받은 자는 기간 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 개요

- 법 제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진흥시설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진흥시설이 법 제1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 취소 전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요건을 갖추 것을 요구함으로써 지정을 받은 자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타법 사례 : 진흥시설 지정 및 해제 관련 내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표 3-33]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의 지정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등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p>	<p>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1.10.25,</p>	<p>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p>

<p>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p> <p>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011.10.28, 2013.3.23)</p> <p>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p> <p>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p> <p>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p> <p>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p> <p>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사업</p> <p>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p> <p>7. 그 밖에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30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엔지니어링사업자 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입주할 것</p> <p>2.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p> <p>3.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p> <p>4. 공유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엔지니어링 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p>제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p>	<p>제7호서식의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영 제30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	---	--

	<p>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1.10.28, 2013.3.23></p> <p>1.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p> <p>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p> <p>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p> <p>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p> <p>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산·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사업</p> <p>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p> <p>7. 그 밖에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제30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엔지니어링사업자 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입주할 것 2.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유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엔지니어링 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	---	--

○ 문화산업진흥법

[표 3-34]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p> <p>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p>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4) 법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관련 하위법령

① 시행령 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표 3-35]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협조 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관련 정보의 수집 2.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확보 3. 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4. 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 5.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개요

- 법 제19조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법에서 정한 지원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 시점에서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관련 정보의 수집
 -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확보
 - 해외에 진출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 해외 홍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
 -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행령 제16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표 3-36]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협조 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16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진흥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4.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개요

-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및 위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위탁기관으로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해외진출과 관련한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을 선정함.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 건축진흥원
 -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타법 사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표 3-37] 엔지니어링 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등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설비나 시설물의 설치, 자원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표 3-38] 문화상품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진흥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1조의7(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위탁) 영 제28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을 말한다.

5) 법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관련 하위법령

[표 3-39]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관련 법조문

법	시행규칙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건축물등의 보수나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2.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역사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설계도서 3. 건축물등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우수 건축물 등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 제20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우수 건축물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 우수 건축물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

□ 해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
- 이에 따라 하위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맞춰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제시
-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기준
 - 우수 건축물 지정 취지에 따라 건축물 설계 자체의 우수성을 우선 기준으로 하고, 초기 우수한 설계의도가 시공단계에서 많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좋은 설계의도가 완공단계까지 잘 반영되어 구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
 - 또한 건축물 등이 주변공간과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제시
-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절차
 -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맞춰 해당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등에 관한 설명서, 설계도서, 건축물등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타법 사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및 지원

-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문화상품의 개발과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문화상품 및 우수문화프로젝트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하위규정으로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 제시

[표 3-40] 우수문화상품 지정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해당 제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p>	<p>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작 자금의 지원 2.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서의 우선 입주 <p>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p>	<p>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 또는 모형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p>

<p>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③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의 기준·절차, 지원,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p> <p>2.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p> <p>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작 기획의 우수성</p> <p>2. 제작의 완성 가능성</p> <p>3. 투자유치 또는 해외 공동제작의 가능성</p> <p>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작·개발 능력의 우수성</p> <p>2. 사업화 성공 가능성</p> <p>3. 문화상품·문화기술의 활용 가능성</p> <p>4. 고용 창출 가능성</p> <p>5. 기술 수준의 향상 가능성(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p> <p>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업체 현황</p> <p>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p> <p>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p> <p>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p> <p>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p>	<p>는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p> <p>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p> <p>제11조(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문화프로젝트·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4(가치평가 신청) 영 제23조의2에 따른 가</p>
---	--	---

<p>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사업화 자금 지원 2. 창업 및 홍보 지원 3. 경영과 관련된 고충의 해소 지원 4. 마케팅·수출 지원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진행 정도 2. 지원금 사용 내역 3. 참여인력의 운용 현황 4. 그 밖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차평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과 같다.</p>
--	--------------------------------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지정 및 지원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발의중인 법안으로 소실되어가는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강화하고 건축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제정된 법률임
 - 이 법에서는 건축자산 가운데 일정절차를 거쳐 등록하는 우수건축자산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0조에서는 소유자가 신청하여 해당 시·도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표시를 하도록 명시
 - 이에 따른 하위규정인 시행령에서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기준 및 등록 절차를 제시하였고 시행규칙에서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여부를 건축물대장에 명기하도록 함

[표 3-41]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①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는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등록기준은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건축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가치를 보유한 것으로 한다. 1.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역사적·경관적 가치 2. 건축·도시 분야에 있어서 학술적·예술적 가치 3. 지역문화를 드러내는 사회적·문화적 가치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경제적 가치</p> <p>제9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절차 등) ① 건축자산의 소유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 신청인(소유자) 성명, 주소, 대상을 명칭, 용도, 소재지, 구조, 규모, 건립년도, 등록신청 사유 등 기재 2. 대상 우수건축자산의 사진, 문헌자료 사본 등 현상을 알 수 있는 시각자료 ② 우수건축자산 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 자료를 검토하거나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이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이 결정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건축자산의 소유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와 같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0조(우수건축자산의 건축물대장 등록 등) 시·도지사는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및 령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은 즉시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실을 명기하도록 한다.</p>

4.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1) 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관련 하위법령

①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등)

[표 3-42] 설계공모의 활성화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p>	<p>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p> <p>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p> <p>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개요

-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는 사업대상 범위를 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설계공모 대행, 심사기준, 공모 참여비용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

□ 해설

- 설계공모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창고, 군사시설 등 디자인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건축을 배제하고 설계공모에 따른 발주기관의 부담을 과중시키지 않기 위해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으로 규정
-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규정
 -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다만,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설계공모의 운영 및 심사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인력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설계공모 운영·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할 수 있음
- 공모심사기준 설계공모운영지침, 평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설계공모의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평가방식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설계공모운영지침'에 따라 설계공모를 운영하도록 규정
- 적격심사입찰방식에 비해 공모참여에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설계 공모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상자에 대한 공모참여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관련 규정 마련

□ 타법 사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 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사·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 중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심사방법·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별표 2 제3호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기존 법령 및 제도 현황 : 설계발주 관련 기존 법령 및 제도 현황

- 건축설계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근거
- 또한 각 중앙부처 및 조달청에서는 설계공모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

[표 3-43] 발주방식별 관련 법령 및 지침 현황

발주방식	관계법령	기준, 지침 등
설계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건축기본법 제24조 (설계공모의 시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시행규칙 제25조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별표 9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국토부 설계공모운영지침 -행안부 설계공모 운영요령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계약의 방법, 경쟁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용역업자의 선정) 별표5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국토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괄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6장 대형공사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6장 대형공사계약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기재부계약예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재부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안부 예규)

□ 기존 법령 및 제도 현황 : 설계공모 관련 기준 현황

- (설계공모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 사유로 설계공모를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설계공모 관련 기준으로는 국토해양부 ‘설계공모 운영지침,’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2011.1.1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이 존재
-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방법을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의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하고 있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별표 5 제3호(건설기술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별표 9 (건축설계인 경우에 해당한다)의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심사방법·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표 3-44]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기준 비교

구분	설계공모 운영지침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설계공모 운영기준
공모 종류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지명초청공모	-일반입찰 -지역제한입찰 -지명입찰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지명초청공모
공모 일정	-90일 이상 -90일 미만 가능	-90일 이상 -60일 이상 90일 미만 가능	-90일 이상 -90일 미만 가능
제출 도서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 -소규모사업에 대해 제출도서 완 화 가능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
모형 제작	별도 언급 없음	모형(필요시)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당선작에 대해서는 가능
심사 위원 선정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시 공개	심사위원 명단을 심사위원회 개 최 전일 기준 10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시 공개
	-단체별 설계공모 시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한 원칙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설치 가능(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의견 서면제출)		
구성	-발주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 선정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부족한 발주기관은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문화예술분야 건축물 또는 시설 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포함	-총 10인 이하 구성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30% 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 위촉 불가능 -심사위원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 성인원 정수의 20% 범위 내에 서 추가 선정 가능 -심사위원회 진행은 비공개 원칙	-총 6~11인 (디자인분과위원을 포함한 5~9인 + 수요기관 직원 1~2인) -전체 외부 전문가로 구성
심사 위원 자격	-해당 설계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 해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해당 건설업무 관련 4급 이상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 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 기 술직렬 임원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 3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 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 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 상 근무한 자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인 자	-조교수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당해분야 부교수 이상
	-건설 문화예술관계 단체 및 연 구기관의 임원		
	당해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 는 자		
	기타 당해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또는 전문 기관 등이 인정한 자		
설명 회	비공개 심의의 경우 필요시 설계 자에게 설명회 부여	공개설명회 개최 가능	심사대상자에게 설명회 부여 의무화
심사 결과 공개 여부	-심사 과정 및 결과(전문분야별 평가점수, 종합평가점 수, 평가서 등) 실명 공개 -필요시 실명은 비공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 모두 공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전문분야별 평가 점수, 종합평가점수, 평가 서 등) 실명 공개 -입상작 및 입상업체의 종 합 평가점수만 실명으로 홈페이지 공개

□ 타법 사례 : 적격심사 관련 기준 검토

- 적격심사 관련 기준으로는 국토해양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이 있음
- 크게 고시금액(2.5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과 이하로 평가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조달청, 행정안전부, 법무부 기준에서는 고시금액(또는 2억 원, 1억 원) 미만일 경우 수행능력 대신 경영상태 및 특별신인도로 평가

[표 3-45] 용역금액별 적격심사방식

구분	PQ	국토해양부		조달청		지자체	
		능력	가격	능력	가격	능력	가격
~1억 원	미적용	30%	70%	10% *	90%	10% *	90%
~2억 원						30%	70%
~고시 금액	적용	50%	50%	30%	70%	30%	70%
~3억 원				50%	50%		
~5억 원				50%	50%	50%	50%
~10억 원				70%	30%	70%	30%
~30억 원				70%	30%	70%	30%
30억 원~		80%	20%				

* 수행능력 대신 경영상태 및 특별신인도 평가

*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2.5억, 행정안전부 3.8억이며, 본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기준

□ 타법 사례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검토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법무부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용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건축설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음
- (조달청 기준) 조달청의 경우, 배점 5점의 설계공모 항목이 있으며,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이 10점으로 다른 기준보다 5점이 낮음

[표 3-46]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 항목	국토해양부		고시금액~	조달청	지자체
	5,000만원				
	미만	이상			
설계공모 실적	-	-	-	5	-
참여 기술자	50	50	50	50	50
유사용역 수행실적	-	34	15	15	15
경영상태	34	-	-	-	-
신용도	4	4	10	10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5	10	15
업무 중첩도	12	12	10	10	10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25조에서는 용역금액의 규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과 평가방식별 세부평가기준을 규정
 - 5억 원 미만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만 실시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후 기술자평가 실시
 - 10억 원 이상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후 제안서평가 실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용역업자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25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를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48조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건설사업관리 및 건축설계(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또는 건축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라 평가

나.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별표 6 제1호에 따라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별표 7 제1호에 따라 평가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

가. 용역비가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건축설계와 용역비가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10억 원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건축설계와 용역비가 20억 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 후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별표 9에 따라 기술제안서 등을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10억 원 이상인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별표 6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 후 용역비가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용역은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하고, 용역비가 30억 원 이상인 용역은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별표 7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표 3-47] 용역적격심사평가 방식

용역비(억 원)	기본계획, 기본설계, 건축설계	실시설계
~2.5	-	-
2.5~5	PQ	PQ
5~10	PQ → 기술자평가	
10~20	PQ → 제안서평가	
20~		PQ → 제안서평가

[표 3-48] 기술자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	참여기술자 경력	30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10
수행계획 및 방법	수행계획	15
	수행방법	10
	기술향상	-
	기타	5

[표 3-49] 기술제안서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설계의 예술성, 작품성, 기능성, 및 안전성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단지계획 등의 적합성	10
	건축계획의 예술성, 작품성 및 기능성	30
	건축구조 및 시공계획의 기술성 및 안전성	15
	주변환경과 도시환경의 조화와 문화의 기여도	15
	경제성 및 공공성	10
	대안의 제안과 신기술 및 공법의 제시	5
작업계획 및 기법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5
	참여기술자 및 용역실적	10

② 시행령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표 3-50] 설계공모의 우선적용 대상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제18조(공모방식 우선적용 대상 외의 설계발주 등) ① 법 제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란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등의 설	

<p>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p>	<p>계를 말한다.</p> <p>②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절차, 자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	--	--

□ 개요

- 예정설계비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행 이전에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평가 대행,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
- 또한 예정설계비 1억을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을 차별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을 규정

□ 해설

- 실력이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설계자에 한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규정
- 설계공모와 마찬가지로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타법 사례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 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영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영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영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대상영역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존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다.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용역비가 10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 원 이상 25억 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15억 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 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2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라. 용역비가 2억 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고 할 때 제출받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5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말한다.

2) 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 관련 하위법령

[표 3-51] 설계의도 구현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22조(설계의도 구현) 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서 참여시켜야 한다. ②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과정에서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2.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	제6조(참여설계자의 확인서) 영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말한다.

<p>③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절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차·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p> <p>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	---	--

□ 개요

-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어야 하는 대상범위 및 설계의도 구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설계자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설계의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선 대상은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의 관리가 일관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축물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 등에 적용함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등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이며, 설계공모를 통해 기획과 기본설계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음
 - 또한 설계의도 구현대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관리를 담보할 수 있어 건축물의 품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예상됨
- 또한 설계자의 참여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에 참여설계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
- 설계자가 시공과정에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시행령 제19조에 명시함으로써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대가기준과 연동함으로써 공정한 건축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 ※ 건축법 시행령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③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 타법 사례

- 「건축법」 제72조 8항, 건축법 시행령 제108조 3항,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사후설계관리업무 내용 등 사후설계관리업무

[표 3-52] 사후설계관리 업무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7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후설계관리 업무 관련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2012.8.22., 타법개정]

제5조(업무의 범위) 제1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무
 - 가. 기획업무
 - 나. 건축설계업무
 - 1) 계획설계
 - 2) 중간설계
 - 3) 실시설계
 - 다. 사후설계관리업무
 - 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업무
 - 1) 리모델링 설계업무
 - 2) 인테리어 설계업무
 - 3) 음향·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 4) 3D 모델링업무
 - 5) 모형제작업무
 - 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 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 8) 흙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
 - 9) 상세시공도서 작성
 - 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
 -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 12)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 13)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 14)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 업무
2. 공사감리업무
 -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 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 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 3)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따른 설계감리업무
 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업무
 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외에 발주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 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 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 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 바.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 사.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 아.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제6조(설계업무) ① 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의 작성기준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호가목의 "기획업무"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치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③제5조제1호나목의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은 별표2에 따른다.

가.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조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다.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④제5조제1호다목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하며,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

⑤건축사가 발주자로부터 제5조제1호나목의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0	25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50	60
계	100	120

2. 타법령에 따른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계획설계	25	30
중간설계	30	35
실시설계	45	55
계	100	120

제7조(공사감리업무)

① 건축사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신청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건축공사감리를 완료한다.

②제5조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이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③제5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3) 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관련 하위법령

[표 3-53]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검토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자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p>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 등을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p>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말한다.</p>

□ 개요

-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공공건축의 범위 및 제6항에 따른 검토 절차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 사전검토 업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 공공건축물을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로 설정함
 - 이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의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의 기획력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설계공모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향후 건축심의를 통해 사업계획 검토 내용 및 설계공모 의도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전단계에 걸쳐 공공건축물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 등을 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제외함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사전검토 요청 시기는 설계용역 입찰 공고 전 단계로 설정하여 기본설계 전에 기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위임

□ 타법 사례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표 3-54]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3, 2009.8.21>

<p>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③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p> <p>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p> <p>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p> <p>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3.25></p> <p>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p> <p>2. 문화재 복원사업</p> <p>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p> <p>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p> <p>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p> <p>6.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p> <p>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p> <p>8. 삭제 <2011.12.30></p> <p>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p> <p>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p> <p>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개요·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해 사업의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	--

-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의 타당성검증제도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투자사업 심사에관한규칙 및 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지침 등」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에 근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재원의 효율적, 계획적 사용을 목적으로 주요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함

[표 3-55] 재정투·용자사업에 대한 심사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용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p> <p>제37조(재정투·용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용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p>	<p>제41조(재정투·용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용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0.12.20, 2011.9.6, 2013.3.23></p> <p>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용자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p> <p>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용자하는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p> <p>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용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공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3.3.23></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신규 투·용자사업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12.20></p> <p>④안전행정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용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제3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투·용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조사 또는 제3항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p> <p>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4) 법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하위법령

[표 3-56]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업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p>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임직원의 의무 등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7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말한다.</p> <p>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p>

□ 개요

-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요건 및 대상 기관, 지정절차를 명시
 -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으로는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을 보유한 곳을 규정
 - 기타 현재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우선적으로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시행의 실행력 강화
-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 타법 사례

-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수행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너지관리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1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 지원센터의 업무 :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표 3-57]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p> <p>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p> <p>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p> <p>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p> <p>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p> <p>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p> <p>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p> <p>2. 다음 각 목의 전문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엔지니어링분야의 전문기관</p> <p>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p> <p>1.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p> <p>2.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제4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p> <p>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p> <p>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지원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p> <p>2. 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p>

	<p>3.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p> <p>4.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p>3.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및 기간</p> <p>4.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p>
--	--	--

5.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1) 법 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제26조(출연금), 제2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관련 하위법령

① 시행령 제22조 (진흥원의 수익사업)

[표 3-58] 건축진흥원 설립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25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제22조(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제공 사업 2.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 3. 그 밖에 건축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목적을

<p>② 건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 기획 2. 제7조제1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3.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사업 4.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5.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6. 출판 및 홍보 사업 7. 교육·연수 사업 8. 국제 교류·협력 사업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p>③ 건축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라 건축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건축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p>	<p>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건축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 개요

-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건축진흥원의 수익사업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법 제25조제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정보제공 사업,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 그 밖에 건축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함
- 건축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해당 사업연도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
-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시행령 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표 3-59] 출연금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26조(출연금) ① 정부는 건축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건축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건축진흥원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 개요

-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건축진흥원의 출연금 요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건축진흥원은 출연금 요청을 위해 출연금예산요구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에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 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6. 보칙 및 벌칙

①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제25조(업무의 위탁)

[표 3-60] 권한의 위임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p>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4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7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취소에 관한 권한 3.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p>②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p> <p>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정보체계의 구축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 개요

-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권한 위임의 내용은 해당 법령에 명시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의 사항을 포함함
- 위탁업무의 내용은 해당 법령에 명시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의 업무를 포함함
-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표 3-61]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법조문

법	시행령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건축주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자의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시공자 또는 감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

□ 개요

-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법 제3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
- 또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해당 행위별로 구체화하는 규정 마련

제4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현안 및 후속과제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을 위한 주요 현안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후속 제도개선 방향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을 위한 주요 현안

1) 내실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서 상호 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을 대상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활동기준과 또는 그 설정행위를 정하는 계획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법령에서 정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 이외에 하위 법령에서 기본계획의 명확한 목표설정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 시행 성과 진단을 위한 평가를 추가로 포함함
-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산업의 현황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진흥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는 절차가 정형화되어 운용될 필요가 있음

- 하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수주 및 매출,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임금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및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그 밖의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관련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주체가 참여하여 공개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할 것임

2) 수준 높은 건축문화 실현을 위한 설계공모 활성화

- 건축설계 발주에서 설계공모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건설공사와 동일한 개념에서 발주되어 온 건축서비스분야에 대해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서 인식되는 전기를 마련함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위법령에서 규정함
- 설계공모 방식에 대해서는 좋은 안을 선정하기 위한 기존의 설계공모 방식,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공모방식, 그리고 2단계에 걸쳐 시행할 수 있는 2단계 공모방식 등을 제안하여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공모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 중 예정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함

- 새롭게 도입되는 설계공모제도 및 발주제도의 확산과 적용,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현행 발주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각 중앙부처 및 조달청에서는 설계공모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어 설계공모에 관한 운영기준의 통합이 필요하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확대된 설계공모를 시행하는데 있어 경험이 없는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수준 높은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며, 유연한 운영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준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함

3)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매뉴얼 및 대가기준 마련

- 설계의도 구현은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자의 설계취지와 생각이 최종적인 건축물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설계의도 구현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로는 하위법령에서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업무에 대해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의 업무로 규정하였음
 - 또한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준공도서 등에 참여설계자의 서명날인을 첨부하도록 함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에 관한 업무 매뉴얼 등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실제 적용단계에서는 법에 명시된 설계의도 구현 업무 항목의 해석에 대해 많은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업무가 설계자의 업무인지, 감리자의 업무인지, 시공자의 업무인지 등에 대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속한 시간에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에 관한 업무 매뉴얼, 시공과정 참여에 소요되는 대가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할 수 있음

4)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 공공건축의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는 국가와 지역의 건축문화를 대표적인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설계의 기획업무를 내실화하는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기적으로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법적용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함
 - 따라서 하위법령에서는 설계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건축물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타법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토록 함
 - 하위법령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연구원 등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관계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의 확보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는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입법예고 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 금액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시행할 경우 연간 약 250여건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운영인력과 검토인력의 확보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총공사비	2011년 기준	검토제도		
[단위:억]				
1,000 ▾	13 건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 이상, ▽재정지원 300억 이상	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사전검토 면제
500 ▾	35 건			
200 ▾	103 건			
100 ▾	119 건			
50 ▾	257 건			우선 적용
0 ▾	11,347 건			확대 적용

[그림 4-1]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대상 공공건축물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전담기관인 건축진흥원의 설치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창업지원, 홍보 및 교육,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요 전담기관으로 건축진흥원 지정 또는 설치에 대한 공감대 마련 필요
- 중장기적으로 건축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과 이를 통한 기대효과의 정량적 제시가 필요함
- 또한 건축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정부 부처 내의 이해관계 및 인접 산업 분야와의 경합에 대한 충분한 대응과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후속 제도개선 방향

- 2013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의의가 있음
- 이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통계 작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개발 지원, 사업지원, 진흥원,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발주방식의 다양화, 표준화 기반조성,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설계 의도 구현, 공공건축의 품격제고 등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또한 관련 현안을 반영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시행방향이 설정되었음
-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한 많은 제도의 개선이 관련 법제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함
- 특히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 중 「건축사법」 및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축서비스산업과 연관이 높은 관련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

1) 건축설계 기획업무의 제도화

① 필요성 및 목적

- ‘기획’의 정의와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여 기획 업무를 용역업무로 발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기획업무 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 편성 근거 마련

② 주요 현안 및 개선방안

- 기획을 사업계획 결정 이후 업무를 기준으로 ‘사업기획’과 ‘설계기획’으로 구분
 - 사업기획 : 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상과 각종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 실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및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항의 내용을 포함

- 설계기획 : 건축사업 결정 이후 설계 발주를 위해 건축주가 목표로 하는 건축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설계조건들을 체계화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항의 내용을 포함
- 기획업무의 법률적 근거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규정하는 방안, 건축사법에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기획업무 수행 예산 편성을 위한 실무 지침/기준 마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 기준(안행부),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안행부) 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기획비’ 항목 신설

2) 건축서비스사업 유형별 업무기준 및 대가기준 개선

① 필요성 및 목적

- 추가업무 대가 미지급 문제 해소, 대가기준의 법적 위상 제고(준수 의무 강화) 등 대가기준의 공정한 준수를 위한 법제도 여건 개선 필요
- 건축서비스사업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가기준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대가기준 개선과 더불어 건축서비스사업의 유형별 업무를 표준화할 필요

② 주요 현안

-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을 통한 대가기준체계 개선
 -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 유형별·규모별 투입인원수 약산표> 방식 병행
 - 대가기준의 건축사 업무항목을 <기본업무>와 <추가업무>로 명확히 구분
- 대가기준의 법적 위상 제고 방안 마련
 - 현행 대가기준 지급 규정(건축사법 제19조의 3)으로는 대가기준 준수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 보다 일반적인

법률에 준수 의무 명시 필요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건축서비스 유형별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현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분류되어 있는 업무항목에 대해 새롭게 정의할 필요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사 업무항목 개선) 건축사의 업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사업무를 규정하는 「건축사법」에서 건축사가 단계별로 수행하는 건축서비스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는 건축사의 업무범위가 1. 설계업무, 2. 공사감리업무, 3. 건설사업관리(CM) 업무, 4. 설계기준 작성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건축사 업무 범위와 차이가 있어 실제화 된 업무에 따른 업무항목 개선이 필요함
 - 무엇보다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개정을 통해 기본업무와 추가업무를 명시하여 대가기준과 연계 필요

[표 4-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의 건축사 업무항목 개선(안)

현행	개선(안)
<p>1. 설계업무</p> <p>가. 기획업무</p> <p>나. 건축설계업무</p> <p>1) 계획설계</p> <p>2) 중간설계</p> <p>3) 실시설계</p> <p>다. 사후설계관리업무</p> <p>라.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p> <p>1) 리모델링 설계업무</p> <p>2) 인테리어 설계업무</p> <p>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p> <p>4) 3D 모델링업무</p> <p>5) 모형제작업무</p> <p>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p> <p>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p> <p>8) 흠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p> <p>2. 공사감리업무</p> <p>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p> <p>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p> <p>다.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p> <p>라.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p> <p>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p> <p>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p> <p>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설계감리 업무</p> <p>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업무</p> <p>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 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p> <p>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외에 발주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p> <p>가.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p> <p>나.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p> <p>다.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p> <p>라.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p> <p>마.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p> <p>바.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p> <p>사.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p> <p>아.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p>	<p>1. 기본업무</p> <p>가. 설계업무</p> <p>1) 계획설계</p> <p>2) 중간설계</p> <p>3) 실시설계</p> <p>나. 공사감리업무</p> <p>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p> <p>2)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p> <p>3)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p> <p>2. 추가업무</p> <p>가. 설계업무</p> <p>1) 기획설계업무</p> <p>2) 인테리어 설계업무</p> <p>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p> <p>4) 3D 모델링업무</p> <p>5) 모형제작업무</p> <p>6)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p> <p>7)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p> <p>8) 흠막이 상세도 작성업무(굴토깊이 10m이상)</p> <p>9) 사후설계관리업무</p> <p>10)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p> <p>11)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형태색채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하는 업무</p> <p>12)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p> <p>13) 상세시공도서 작성</p> <p>14) 각종 심의 대응 업무</p> <p>15)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p> <p>16)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p> <p>17)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p> <p>18)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설계 업무</p> <p>나. 공사감리 및 관련업무</p> <p>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p> <p>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p> <p>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설계 감리 업무</p> <p>4)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업무</p> <p>5)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p> <p>6)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p> <p>7)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p> <p>8)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p> <p>9)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p> <p>10)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p>

- 대가기준체계 개선방향(안)
 - 기획업무를 포함한 건축서비스 업무범위 및 그에 따른 대가기준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모두 규정하는 것은 본 법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으며,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다만, 표준화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표준화의 범위를 건축서비스 업무 및 대가기준에 관한 것으로 확대시키고, 향후 「건축사법」 등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대가기준체계 개선방향 설정)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 유형·규모별 투입인원수 약산표> 방식 병행
 - 건축서비스사업은 세부 업무항목별 투입인원수 산출기준이 토목설계에 비해 훨씬 복잡하므로 일본에서의 적용사례가 있어 그 현실성이 검증된 <건축물 종류별/연면적규모별 투입인원수(man·day) 약산표> 마련 필요
 - 대가기준의 건축사 업무항목을 <기본업무>와 <추가업무>로 명확히 구분
 -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리적 방법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여 가산토록 명시

3) 건축서비스사업의 해외진출 지원

①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건축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건축서비스산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

② 주요 현안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당국의 정보와 수주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수주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이를 위해 해당국 법규 및 인허가 절차, 현지기관, 설계비, 사례 등 문화권별, 국가별 기초정보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표준계약서, 업무매뉴얼, 용어사전, 체크리스트, 시방서 구축

□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 정책, 법안, 금융, 재정 등과 관련하여 손해보험, 보증, 장기미수금, 송금, 세제지원, 포상 등 국가차원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필요
- 정보, 행정, 자금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법 제25조에 의한 건축진흥원 등의 활용 검토 필요
-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네덜란드 The Creative Industry Fund NL의 사례와 같이 초기단계의 현지 사무공간, 컨설팅, 행정지원 및 신진 건축가 지원
- 해외건설협회, LH 등의 해외진출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분야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기 투자비 지원

□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협조

- 현지정보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관련 국가기관 및 국제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 정보 수집 및 제공의 중심으로 대사관의 기능강화(건축설계 전문인력 파견) 및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강화- 국토교통부, 외교통상부, 국정원, KOTRA (정부+민간+현지교민)
 - 타국 건축협회 등과 교류, 설계사 정보 교환을 위한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창구 일원화
-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주요 내용
 - 국가별 법규 및 인허가 절차, 설계비 정보 등의 제공
 - 해외계약 및 클레임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
 - 설계사 규모별, 업무유형별, 프로젝트 유형별 맞춤형 지원

□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 건축설계 전문 교육 및 정기 강좌 개설(교육원 또는 위탁교육)
 - 법, 계약, 클레임, 언어, 지역정보, 기술 등과 체크리스트 교육
 - PQ교육, 협회 건축사 보수교육 시 해외관련 과목 교육
- 해외진출 경험사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인력개발
- 해외전문인력Pool 정보포털 운영(지역, 기술, 법률, 협상 등)

□ 한국 건축 및 건축가의 국내 외 홍보

- 한국 건축 및 건축가의 해외 홍보를 위한 전시, 광고 등의 지원

4) 건축설계 발주 제도 개선

□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체결 시 수의시담 적용 문제 개선 필요

- 설계공모 당선 이후 계약체결 시 수의시담을 통해 설계비를 삭감하는 고질적인 문제 개선 필요
- 공모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이유로 수의시담을 통해 공공 건축물 설계대가기준에 따라 설계공모 공고 시 명시한 설계비의 80% 내외 금액으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어 부실설계 및 건축설계업계 쇠락의 원인으로 작용
-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타 수의계약 사유에 비해 건축설계는 설계 공모는 당선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 사유 중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를 삭제 필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근거 조항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심사방법·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 제도개선이 어려울 경우, 설계 공모안 작성비용 지급대상에 당선작을 포함하도록 운영지침 개정안 검토
- 설계공모 참여 비용 보상을 위한 예산관련 지침 개정 필요
 - 설계공모 사례에서 대부분의 경우 작성에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제출물을 요구하고 있음
 -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참여비용이 보상되는 대상은 당선작을 제외하고 2-3개 업체 정도이며, 보상비용도 상금으로 1000~200만원 수준인 실정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건설비(420) 집행지침의 적용범위에 ‘기획’ 업무를 추가하고,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상의 건설비 목으로 ‘기획비’를 신설하여 설계공모 관련 비용 항목 명기

[표 4-2]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개선안

목번호	목	내역
420	건설비	00. 기획비(신설) 1. 건축물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건축설계가 수행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조사, 연구, 자문 행위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3. 공모안 작성 비용 보상 등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에 소요되는 경비 01. 기본조사설계비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02. 실시설계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발주기관별 적격심사기준 개선 필요

- 고시금액 이하의 설계용역의 설계자 선정은 대부분 적격심사 입찰방식이 적용되며, 소액용역으로 취급 받아 능력평가 비중은 10%에 불과하며, 수행 능력 대신 경영상태 및 특별신인도로 평가하는 실정

[표 4-3] 용역금액별 적격심사방식

구분	PQ	국토해양부		조달청		지자체			
		능력	가격	능력	가격	능력	가격		
~1억 원	미적용	30%	70%	10% *	90%	10% *	90%		
~2억 원									
~고시금액									
~3억 원	적용	50%	50%	30%	70%	30%	70%		
~5억 원									
~10억 원				70%	30%	50%	50%	50%	50%
~30억 원									
30억 원~									

* 수행능력 대신 경영상태 및 특별신인도 평가

*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2.5억, 행정안전부 3.8억이며, 본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기준

- 공공건축 설계용역에 대한 각 발주청의 적격심사 입찰방식을 개선하여, 사업 수행능력의 평가비중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업체 선정에서의 기술력의 평가 비중 강화
 - 단, 낙찰가 하한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여 부실설계를 방지
 - 고시금액 미만 용역에 대해서도 경영상태가 아닌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적용

[표 4-4] 건축설계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안(예시)

용역금액	능력 : 가격	입찰가격 평가	낙찰가 하한률	낙찰자 결정
10억 이상	80:20	20-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예정가격 96% 이상은 평점 10점	83%	90점 이상
5억 ~10억	70:30	30-4×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예정가격 96% 이상은 평점 25점	86.75%	95점 이상
고시금액 ~5억	50:50	50-20×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예정가격 90.5% 이상은 평점 45점	87.75%	
고시금액 미만	30:70	70-20×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예정가격 89.25% 이상은 평점 65점	87.75%	

□ 타 부처의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통합 또는 개정

-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의 통합 또는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 (설계공모 시 자격제한 금지) 설계공모를 추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실적 및 지역 등을 제한하는 제한공개공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
- (설계공모 기간규정 강화)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을 원칙으로 규정 (단, 제안 공모방식은 30일 이상으로 규정)
- (심사위원 명단 공개) 설계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고, 과당 경쟁 등의 우려로 심사위원을 사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조항 삭제
- (제출물 간소화 및 작성비용 제공규정 강화) 설계공모 제출물에 CG, 투시도 및 조감도, 모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되, 발주자가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CG, 투시도 및 조감도, 모형 등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
-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심사위원은 5~9인으로 구성하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제한
 - 건축계획분야 이외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규정 강화) 입상작에 대해서는 상금 및 공모안 제작비(CG, 투시도 및 조감도, 모형 등 요구 시)를 지급하여야 하며,

공모안 작성비용 지급을 위해 총사업비 예산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

- (설계공모방식 다양화) 제안공모방식, 2단계 공모방식 등의 공모방식 관련 규정 구체화
 - 완성된 설계안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제안만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안공모방식을 도입
 - 1단계에서는 아이디어 또는 기술제안서 심사를 실시하고 2단계에서 설계안을 제출받는 2단계 설계공모 시행
 - 현재의 각종 설계공모 관련 지침을 공통사항과 설계공모, 2단계공모, 제안공모의 공모방식별 운영방법으로 재구성하고 각 공모방식별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

[표 4-5] 설계공모 운영지침(안)

현 행	재 편 방 향
제1조 목적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범위	제1조 목적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적용범위
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	제3조 용어의 정의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
제6조 설계공모의 일정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제7조 등록	제7조 등록
제8조 설계지침서	제8조 질의응답
제9조 질의응답	제9조 심사위원의 자격
제10조 제출도서 등	제10조 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
제11조 심사위원의 자격	제11조 저작권
제12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2조 응모안의 전시
제13조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등	제13조 공모안의 반환
제14조 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	제14조 다른 기준과의 관계
제15조 심사	제15조 세부기준
제16조 입상작	제16조 재검토기한
제17조 저작권	
제18조 응모안의 전시	제2장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19조 공모안의 반환	제1조 절차
제20조 다른 기준과의 관계	제2조 일정
제21조 세부기준	제3조 설계지침서
제22조 재검토기한	제4조 제출도서 등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등
	제7조 심사
	제8조 입상작
	제3장 2단계 공모 운영방법
	제1조 절차
	제2조 일정

	제3조 설계지침서 제4조 제출도서 등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등 제7조 심사 제8조 입상작 제4장 제안공모 운영방법 제1조 절차 제2조 일정 제3조 설계지침서 제4조 제출도서 등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등 제7조 심사 제8조 입상작
--	---

□ 건축설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마련

- (건축설계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 적격심사입찰방식에서 건축설계에 적합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별도 마련
 - 기술개발 투자실적 등 축소 및 설계공모 당선실적 등을 추가 확대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세부평가기준 별도 마련
- (적격심사방식에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비중 확대) 가격입찰에 대한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기술력 위주의 설계자 선정을 도모
 - 가격에 대한 능력의 평가비중을 현행 기준보다 한 단계씩 강화하여 업체 선정에 있어서 기술력의 평가비중을 확대
 - 건축설계의 경우, 현재 설계대가기준에 따라 공사비 대비 산정한 설계비를 예정가격으로 설정하므로 낙찰가 하한율은 현행 안행부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 설계를 방지
 - 현행 각 발주청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별도의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표 4-6]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가항목	배점	평가 방법
설계공모 실적 등	5	· 설계공모 당선 및 입선 건수
참여기술자	55	· 참여기술자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유사용역 실적	15	·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용도	10	·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등, 재정상태 건실 (신용평가등급과 자기자본·유동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
기술개발 실적	5	· 기술개발실적(건축계획 및 설계 관련 기술에 한함)및 투자실적 등에 따라 평가
업무중첩도	10	· 참여기술자의 업무하중 등에 따라 평가

[표 4-7] 설계공모 실적 세부평가기준(안)

용역비 규모			배점 (5)
1억 미만	1억~고시금액	고시금액 이상	
6~3점	9~7점	10점 이상	5
2~1점	6~3점	9~7점	4.5
0점	2~1점	6~3점	4
-	0점	2~1점	3.5
-	-	0점	3

[표 4-8] 기술자 경력 등 (책임건축사 또는 책임기술자의 경력) 배점(안)

용역비 규모			배점	
1억 미만	1억~고시금액	고시금액 이상	(9)	(7)
9년 이상	12년 이상	15년 이상	9	7
6년 이상	9년 이상	12년 이상	8.1	6.3
3년 이상	6년 이상	9년 이상	7.2	5.6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이상	6.3	4.9
-	3년 미만	6년 미만	5.4	4.2

[표 4-9]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안)

용역비 규모			배점		
1억 미만	1억~고시금액	고시금액 이상	(15)	(7)	
3건 이상	5건 이상	상대평가 적용	수	15	7
2건 이상	4건		우	13.5	6.3
1건	3건		미	12	5.6
0건	2건		양	10.5	4.9
-	1건 이하		가	9	4.2

[표 4-10] 신용도(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경우) 배점(안)

용역비 규모			배점 (3)
1억 미만	1억~고시금액	고시금액 이상	
기업신용 BBB-미만 B-이상 (기업어음 A3-미만 B-이상, 회사채 BBB-미만 B-이상)	기업신용 A-미만 BBB-이상 (기업어음 A2-미만 A3-이상, 회사채 A-미만 BBB-이상)	기업신용 A-이상 (기업어음 A2-이상, 회사채 A-이상)	3
기업신용 CCC+이하 (기업어음 C이하, 회사채 CCC+이하)	기업신용 BBB-미만 B-이상 (기업어음 A3-미만 B-이상, 회사채 BBB-미만 B-이상)	기업신용 A-미만 BBB-이상 (기업어음 A2-미만 A3-이상, 회사채 A-미만 BBB-이상)	2.7
미제출	기업신용 CCC+이하 (기업어음 C이하, 회사채 CCC+이하)	기업신용 BBB-미만 B-이상 (기업어음 A3-미만 B-이상, 회사채 BBB-미만 B-이상)	2.4
-	미제출	기업신용 CCC+이하 (기업어음 C이하, 회사채 CCC+이하)	2.1
-	-	미제출	0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활성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근거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건축서비스 산업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여 적용 근거 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제43조의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서비스산업
8.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9.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용역비 규모에 따른 평가분야별 배점(안)
 - 용역비 규모에 따라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차별화하고, 고시금액 이상의 건축설계용역은 객관적 평가는 pass or fail로 평가

[표 4-11] 용역비 규모에 따른 평가분야별 배점(안)

평가분야		1억 미만	1억~고시금액	고시금액~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10	pass of fail
	정성적 평가	60	70	80
입찰가격 평가		20	20	20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배점(안)

[표 4-12]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배점(안)

평가 항목	주요 내용	배점		
		(60)	(70)	(80)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10	10	10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기술제안의 적절성·독창성·실현성 등 • 과업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과제를 3~4개 설정	40	45	55
수행계획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5	10	10
제안서 발표	•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5	5

○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배점(안)

-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은 책임전문인력의 등급·경력, 참여전문인력의 등급·경력,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으로 구성
- 평가배점 배분은 용역금액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책임전문인력의 평가비중을 강화하고, 용역금액의 규모가 큰 경우, 참여 전문인력과 수행실적 등의 평가비중을 강화

[표 4-13]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배점(안)

평가항목		1억 미만	1억~고시금액	고시금액~
책임전문인력	자격	6	1	3
	경력	6	2	3
참여 전문인력		2	2	4
유사용역 수행실적		2	3	6
경영상태		2	1	2
신인도		2	1	2
총점		20	10	20(18점 이상 pass)

5) 설계변경 대가지급 현실화

① 필요성

- 건축주의 요구·승인으로 인한 설계내용의 변경이라 할지라도 건축주는 설계자의 업무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대가 지급 없이 설계자의 부담으로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설계자의 업무손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저가 설계 및 대가 미지급으로 인한 건축물의 품질 저하가 초래되어 국민의 안전과 건축문화의 발전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② 관련 규정

- (現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건축주의 요구사항 변경으로 발생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 없음. 다만,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의 설계변경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에 대한 정의 없음

【시공부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설계변경 업무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되지 않고 설계변경업무에 대한 대가 지급을 할 수 없음

③ 개선방안

- ‘설계변경’의 정의를 공공부분의 표준 계약체계 내에 별도로 정의하여 건축주의 승인 이후에 이뤄지는 건축주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대가 지급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설계부분】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건축주 등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시 대가 지급)의 <신설>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발주자 등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의 제5호 <신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 및 설계계약에 있어 발주자 등이 승인한 이후에 발주자 등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설계변경’의 정의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의 제3항에서 규정한 표준계약서 개정 시 반드시 설계변경의 용어 정의와 설계변경 시 대가 지급을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제5장 결론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 및 시행은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데 커다란 의의가 있음
 -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높은 잠재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낮은 형편임
 -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국가적인 지원체계의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건설산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온 건축서비스를 지식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우선순위가 아닌 설계안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음

-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임
 - 2014년 6월 5일 시행예정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시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의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쟁점을 도출 및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건축서비스산업의 도약을 위한 건축계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은 그동안 미약했던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의의가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미진하였거나 입법전략상 누락된 부분에 대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안의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중기적 관점에서는 법률의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과 추진계획 등이 마련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법률안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유광흠 외(2011), 「건축제도의 체계적인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유광흠 외(2010), 「건축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진욱 외(2010),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 iii.
- 황은경 외(2007), 「건축관련 법령 재정비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유광흠 외(2013),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중소규모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수정 외(201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vii.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0),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건축 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66.
- 윤우진 외(2008),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산업연구원, pp.166-167.
- 박영민 외(2012),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p.110.
- 건설산업선진화기획단(2004.12), 「건설산업의 선진화전략」,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2012),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2013~2017]」,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
- 문화재청(2007), 「근대 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연구」
-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 「제1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2009·2010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서울연구원(2013),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한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pp.10-11.
- 한국개발연구원(2013), 「2012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공공투자관리센터, pp.3-4.

국회예산정책처(2011),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국회예산정책처. p.57.
 국토해양부,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2011.04), 「2010년 4/4분기 및 연간 오피스
 매장용빌딩 임대료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 결과 보고서」, 국토해양부,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11.04),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진흥센터 (<http://bi.gist.ac.kr>)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http://www.nfec.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
 서울디자인창작지원센터 (<http://www.seoul-design.or.kr>)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http://pimac.kdi.re.kr>)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http://www.kenca.or.kr>)
 대한건축사협회 (<http://www.kira.or.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김수근 문화재단 (<http://www.kimswogeun.org>)
 새건축사협의회 (<http://www.kai2002.org>)
 한국건축가협회 (<http://www.kia.or.kr>)
 여성건축가협회 (<http://www.kifaonline.com>)
 공공기관 알리오(<http://www.alio.go.kr>)
 CABE (<http://www.cabe.org.uk/>)
 MIQCP (<http://www.archi.fr/MIQCP/>)
 PBS (<http://www.gsa.gov/>)
 핀란드 국유재산관리소 (<http://www.senaatti.fi/>)
 서울디자인재단 (<http://www.seoul-design.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http://www.nfec.go.kr>)
 GIST 창업진흥센터 (<http://bi.gist.ac.kr>)
<http://blog.naver.com/happycode?Redirect=Log&logNo=10103924424>

기타

문화관광부, 한국건축가협회(2007), “2007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상세 요강”
 대한건설협회 “2011년도 건설공사 계약실적 자료”
 서울시(2012.05.1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기능” 보도자료
 신영수(201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신영수의원 대표발의”
 보도자료, 2012. 2. 13(월), 공공건축물 수준 높일 '서울시 공공건축가' 77명 활동 개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Tchah, Chu Young
Sim, Kyung Mi
Youm, Chirl Ho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Building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e significance to prepare a momentous motivation for promoting building service industry. Meanwhile, competitiveness of Korea's building service industry is rated as undeveloped country's level despite of its potential and importance, so its market share on the world has been low. However, the beginning of national support system is arranged with enactment of 「Building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building service, which was regarded as a part of construction industry, is defined as knowledge service, and the basis that considers not cost but design plan preferential at public buildings as the center is built.

The enactment necessity of 「Building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was magnified as a new act because changeover necessity for new growth power industry was came up with promoting backward building service industry in earnest, and building service industry was recognized as knowledge-intensive and labor-intensive industry that has great potential to create a higher added value as catalyst of the other industry areas. Building service industry creates 60.1% added value compare to 44.6% added value in construction industry, also it is effective to high creation employment of 41.8% compare to 27.0% in construction industry. In addition, building service industry has a role as catalyst to related other industries, and practical use effect is turned up as intermediary products of 94.6% in all industry areas.

Furthermore, propulsion power is reinforced because of not only necessity awareness of continuous support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expanded considering property value and economic ripple effect of a good city and a good building, but also necessity about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plan in

industry view for national status improvement, city competitiveness securement, job creation and added value extension.

On the strength of these legalization efforts, 「Building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was proposed on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 2011, lay the act on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2012 again, and the act was enacted on June 2013. After that, ‘Building Design Industry Fosterage TFT’ was launched from August to December in 2013, and the TFT deducted issues to promote building design industry and arranged action plan of 「Building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

In this sense, the research prepares establishment proposal of the lower statute of 「Building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 The main purpose of the research is proposing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Building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act that will be implemented on June Fifth 2014.

The research arranges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 methodical policy enforcement, deducts related issues with building service industry, suggests policy direction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internal and external building service industry, and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 of follow-up policies to promote building service industry.

The cooperation and effort of national architecture field is needed to jump up building service industry. The enforcement of 「Building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is meaningful as an institutional basement performing national concern and support that was insufficient. However, trial and error and continuous improvement are essential on the implement process of the act for substantive outcome. Supplement contents about discussion that was not entirely satisfactory on legislation process, and omission part in legislation strategically should be deducted in the short-term view. Also, supplementation of the legislation that reflects the deduction should be fulfilled.

In the medium-term perspective, both perception of problems by monitoring process of enforcement of the act, and an effort that solves the problem are necessary. In the long-term, strategy and promotion plan to enhance building service industry should be arranged, and institutional basis for the arrangement should be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Keyword : architectural service,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 promotion act